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방안 연구

서영주 장명선
손문금 조연숙
양소영 이지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I 연구개요 _ 0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5
제3절 연구방법 및 절차	6
제4절 기대효과	8

II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주요내용과 개정방향 _ 09

제1절 「여성발전기본법」과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법적 성격과 관계	11
제2절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과정 및 주요내용	13
1.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과정	13
2. 현행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구성과 주요내용	15
제3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논의의 쟁점과 시사점	21
1.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논의의 배경	21
2.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	23
3.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논의의 쟁점과 시사점	28
제4절 16개 광역 「여성발전기본조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	36
1. 조례 명 및 총칙	36
2. 여성정책	42

제5절 현행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방향	60
1. 조례 명	60
2. 총칙	62
3. 여성정책	64
4. 여성위원회	65
5. 여성발전기금	66
6. 실효성 제고 및 서울시 정책 특성 반영	67

Ⅲ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개요 _ 69

제1절 법의 명칭	71
가. 성평등 포함	71
나. 제명 선정	72
제2절 조례의 체계와 구성	73
제3절 조례의 내용	73
가. 주요 개정 골자	73
나. 장별 조례 개정 내용	76

Ⅳ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과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시행규칙안」 _ 103

제1절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전문	105
제2절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시행규칙안」 전문	115
제3절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조문대비표	119
참 고 문 헌 _ 133	

표 목차

표 I-1	조례개정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회의	7
표 II-1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과정과 주요 개정내용	14
표 II-2	현행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구조와 주요 내용	18
표 II-3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구조와 내용비교	25
표 II-4	「여성정책기본법안」 및 「성평등기본법안」 추진체계 비교	33
표 II-5	두 법안의 쟁점사항에 관한 비교표	34

■ 연구요약

I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 여성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논의 필요
 - 여성중심 접근에서 젠더관계 접근과 성 주류화 정책을 포함하는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각 분야에서 구축·발전되어 온 개별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기본조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시 여성정책추진 근거규정으로서 내용의 포괄성을 확보할 필요
 -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여성·가족 정책내용의 확대, 성평등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와 성 주류화 조치의 강화 등 현행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지 못한 내용을 대폭 보완한 조문과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법체계 재구성 및 용어정리 필요
 - 조례 내용 중 용어변경 및 정의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법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재구성할 필요도 있음

2. 연구 목적

- 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 서울시 여성정책 추진의 근거규정 제시
 - 여성정책의 목표로서 가족과 사회에서 성평등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마련 및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더불어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서울시 여성의 지위 및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의 기반 조성 및 성 주

류화 제도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거규정을 보강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연구 방법

- 연구문헌, 행정자료, 법률자료 등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
- 여성정책 영역별, 주제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조례 내용검토 및 개선안 도출
- 내부 연구진 회의를 통한 조문안 도출

4. 기대효과

- 성평등 개념의 도입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 성 주류화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제공을 통해 서울시정의 성 주류화 확산 및 강화
- 중앙정부 및 타 시·도, 서울시 자치구의 여성관련 법률 제·개정에 중요한 모형제시

II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주요내용과 개정방향

1. 「여성발전기본법」과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법적 성격과 관계

- 국가(중앙정부)의 정책기본법 제정과 그 방향은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과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정책적 협의를 통해 국가책무를 달성하는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임. 조례는 기본법의 구체적인 정책시행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그 성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임. 성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은 지역 즉, 지방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임

2.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과정 및 주요내용

-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1997년 7월31일 조례 제3657호로 제정되어, 2011년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
- 현행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5개의 장(1장 총칙, 2장 여성정책, 3장 여성위원회, 4장 여성발전기금, 5장 보칙) 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여성발전기본법」개정논의의 쟁점과 시사점

- 정부제출안인 「여성정책기본법안」은 총6장, 제5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낙균의원안인 「성평등기본법안」은 총7장 제55조로 구성되어 있음
- 개정논의의 쟁점

〈표〉 두 법안의 쟁점사항에 관한 비교표

구 분	정부제출안	신낙균의원안
제명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정의 규정	성평등, 성인지 등 신설	성평등, 성차별 신설, 성희롱 개념 확대
여성정책추진체계	여성지위위원회(민관공동위원장) 여성지위실무위원회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전문위원회) 성평등정책실무위원회
	중앙부처, 광역지자체에 여성정책책임관 지정	중앙부처, 지방정부 기관의 성평등정책책임관, 성평등정책담당관 지정
여성 참여 확대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및 조치결과 제출 의무화, 위원회 구성 시 성별로 균형 있는 참여 권고	공공기관의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60% 초과 금지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근거 마련	규정 없음
국제협약 이행 보고서등 사전 국회보고	규정 없음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의 제출 시 사전 국회 보고
성 주류화 조치	관련 규정 산재해 있음	성 주류화 조치 관련 절 신설
법률구조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희롱, 성차별 피해자 지원
기금	여성발전기금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성차별 및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명시	성평등기금 성차별, 성희롱 및 성별을 이유로 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명시

구 분	정부제출안	신낙균의원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양성평등진흥원으로 변경	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변경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주관기관	지정 근거 마련	규정 없음
폭력 예방 교육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 교육 실시
성차별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시정소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진정, 성차별시정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규정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3개월

○ 시사점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가족과 사회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 성 주류화를 위한 추진방법, 추진체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함

4. 16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논의의 쟁점과 시사점

-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방향을 도출함에 있어서, 16개 시·도 관련 조례와 국회에 계류 중인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개정안인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함

5. 현행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방향

○ 조례 명

- 여성정책의 목적이 성평등 촉진,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 명에 ‘성평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조례 명에 ‘성평등’을 명시할 경우 여전히 여성중심의 정책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 특화 전략과 주류화 전략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함
-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서울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

으로서 작용하고, 성평등을 위한 서울시 정부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정책’ 개념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

- 정책관련 ‘기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규정으로 구성되고 있음. 따라서 ‘기본’조례라고 하여 여성정책 방향 및 내용에 대한 선언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님. 또한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법들의 특정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면서 본 조례를 다른 조례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기 위해 ‘기본’ 조례로 명시할 것을 제안함

○ 총칙

-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시의 책무 내용도 현행 소극적 책무에서 벗어나 여성정책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실시하고, 필요한 체제 정비와 재정 마련,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용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들의 근거규정이 되고 있는 다양한 조례들과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여성정책

- 여성정책의 시책규정에는 여성정책과 성 주류화 정책이 혼재되어 있음. 이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위원회

- 여성위원회의 명칭은 「서울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및 자문 기능을 명시화할 것을 제안함.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 주류화 조치 전반을 추진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책임관 지정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Ⅲ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개요

1. 법의 명칭

- 가정과 사회 속에서 성평등 관계를 규정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특성을 나타내는 제명으로 「서울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조례의 체계와 구성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3장 여성위원회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제5장 보칙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6장 보칙

3. 조례의 내용

- 주요 개정 골자
 - 조례목적의 보완 및 정의 규정 신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26조
 - 서울시 여성정책의 내용을 포괄하는 근거규정 마련: 안 제24조, 제27조
 - 여성위원회 및 추진체계의 정비: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성평등 촉진 및 정책의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한 규정의 정비: 제16조~20조, 제35~38조
 - 법체계 및 여성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용어 및 위치 조정: 안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5조

○ 장별 조례 개정 내용

- 제1장 총칙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시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적극적 우대조치)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여성정책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3장 여성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기능) 제24조(구성) 제25조(위원의 임기) 제25조의2(해촉)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7조(회의) 제28조(의견청취) 제29조(분과위원회) 제30조(운영세칙)	제7조(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8조(구성) 제9조(의견청취 등) 제10조(분과위원회) 제11조(운영세칙) 제12조(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등)

-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
제6조(통계·자료의 성별 표기) 제7조(여성정보 제공) 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9조(여성주간행사) 제10조(시정참여 확대) 제11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제12조(남녀평등의식 제고) 제13조(성차별 개선 등)	제13조(적극적 조치) 제14조(시정참여 확대) 제15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및 관리직 승진목표제) 제16조(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등) 제17조(일·가정 양립 지원) 제18조(모·부성 권리 보장)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제20조(성평등의식 제고)

제14조(경제활동 지원) 제15조(복지증진) 제16조(아동보육) 제17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18조(단체의 지원) 제19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제20조(국제협력 지원) 제21조(의견수렴창구 운영) 제22조(유공자 표창)	제21조(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등) 제2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제23조(여성의 복지증진) 제24조(도시공간 및 시설) 제25조(여성의 건강증진) 제26조(성평등 관련 정보제공) 제2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28조(성평등 문화의 조성)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제3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제32조(국제협력 지원) 제33조(시민참여) 제34조(유공자 표창)
---	---

-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여성정책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제9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8조(통계자료의 성별 표기)	제35조(성별영향분석평가) 제36조(성인지 예산) 제37조(성인지 통계) 제38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 제5장 여성발전기금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31조(기금의 설치 등) 제32조(기금의 용도) 제33조(기금의 관리·운영)	제39조(기금의 설치 등) 제40조(기금의 용도) 제41조(기금의 관리·운영)

- 제6장 보칙

현 행	개 정 안
제5장 보칙	제6장 보칙
제34조(사무의 위탁) 제35조(사전협의)	제42조(사무의 위탁) 제43조(사전협의)

I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방법 및 절차

제4절 기대효과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연구개요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여성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논의 필요
 - 서울시 여성정책의 근거로 작용해온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1997년 전국최초로 제정되어 그 의미가 남다름.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기본조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여성중심 접근에서 젠더관계 접근과 성 주류화 정책을 포함하는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성평등 개념의 도입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 각 분야에서 구축·발전되어 온 개별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기본조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중앙정부의 경우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으로 「성평등기본법안」과 「여성정책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며, 경기도는 「성평등기본조례」로 2009년 이미 개정한 상태임
- 서울시 여성정책추진 근거규정으로서 내용의 포괄성을 확보할 필요
 - 현행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함. 즉, 일-가정양립, 여성친화적 도시설계,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여성친화적 도시시설 확충, 여성을 위한

문화예술참여기회 확대,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 등과 같은 새로운 여성 및 가족 정책 주요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조례로서의 위상이 부족함

- 즉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여성·가족 정책내용의 확대, 성평등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와 성 주류화 조치의 강화 등 현행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지 못한 내용을 대폭 보완한 조문과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서울시 성평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조례로서 법체계 정비

- 국제기구 혹은 단체에서 발표하고 있는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성별격차지수는 2010년 115개국 중 104위로 최하위권이고,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여성권한척도(GEM)는 2009년 109개국 중 61위로 하위권임
-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 또한 2005년 58.5점에서 2010년 62.6점으로 소폭 상승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부문별 성평등 수준은 보건부문이 가장 높아 89.1점, 다음은 교육·직업훈련부문 75.0점, 문화·정보부문 72.5점, 경제활동부문 67.9점, 복지부문 66.5점, 가족부문 59.2점, 안전부문 56.6점 순이었으며, 의사결정부문은 19.2점으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으로 나타남(김태홍 외, 2011)
- 서울시 성인지표에 따르면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 또한 2006년 42.85점에서 2010년 46.70점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음(김창연·성유진, 2010)
- 이렇게 낮은 우리사회와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 정책의 성평등 목표를 법의 명칭에서부터 명확하게 밝히고, 성평등 향상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며, 서울시의 성평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조례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시 발전적 여성정책 내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여성행복프로젝트는 생활밀착형 서울시 여성정책 모형으로 정립되었음. 서울시 여성행복프로젝트의 경우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시시설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고, 시정전반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정책으로서 평가받고 있음. 따라서 여성행복프로젝트의 의미있는 성과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규

정의 명시화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여성행복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여성정책 내용을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명시화하여 정책시행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책시행 성과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법체계 재구성 및 용어정리 필요

- 조례 내용 중 용어변경 및 정의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예를 들어 ‘적극적 우대조치’는 ‘적극적 조치’로, ‘편부모’는 ‘한부모’로 변경이 필요하며 ‘요보호여성’에 대한 용어삭제도 필요함. 또한 성평등, 여성정책 등에 대한 정의규정도 필요함
- 제2장에 여성정책과 성 주류화 정책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분류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1장 총칙에 적극적 우대조치 조항이 위치하는 등 법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재구성할 필요도 있음. 즉 조례 내용 중 용어변경 및 정의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법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재구성할 필요도 있음

제 2 절 연구목적 및 내용

1. 연구목적

○ 여성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한 서울시 여성정책 시행 근거규정 보강

- 1997년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어왔음에도 사회환경의 변화를 모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같은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시행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여성정책 환경변화가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가지는 함의를 도출하고, 현행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방향과 내용을 도출하고자 함

○ 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 서울시 여성정책 추진의 근거규정 제시

- 여성정책의 목표로서 가족과 사회에서 성평등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반마련 및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더불어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서울시 여성의 지위 및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의 기반 조성 및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거규정을 보강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특성과 주요 내용 분석 및 개정 방향 도출
 - 「여성발전기본법」과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법적 성격과 관계,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연혁 및 현행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주요 내용 분석, 정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논의의 쟁점과 시사점 분석, 타 시·도 여성발전기본조례 내용 비교·분석 등을 통해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특성 및 개정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여성경제활동, 성 주류화, 다양한 가족과 소외여성, 여성인권, 여성의 건강과 문화, 도시공간 및 시설, 시민사회와의 협력, 여성정책 추진체계 등 다양한 여성정책분야별 여성정책 환경 변화가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가지는 함의를 도출하고,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안 제안
 - 서울시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 3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 연구문헌, 행정자료, 법률자료 등 분석을 통한 문헌 연구
 - 「여성발전기본법」,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등과 관련된 연구문헌 및 의회자료, 관련 세미나 자료 등을 활용해 연구·분석
 - 중앙정부의 여성정책 관련법 및 16개 시·도 여성발전기본조례 등 법률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
 - 서울시 여성정책의 주요 사업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행정자료 분석 등

- 여성정책 영역별, 주제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조례 내용검토 및 개선안 도출
 - 관련 학계 전문가나 정책연구자, 여성단체활동가 등에 대한 심층면접과 자문을 구하여 여성정책 분야별 조례안의 필요 내용을 도출함.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제별·영역별 검토를 위한 전문가회의 3차례, 전체적인 내용검토를 위한 전문가회의 3차례로 이루어짐
 - 주제별·영역별 구성은 조례의 전체적인 구성체계 검토와 여성정책영역으로 여성 경제활동, 소외여성, 여성인권, 가족, 성 주류화, 추진체계, 거버넌스, 도시공간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 전체적인 내용은 여성정책 영역별로 필요한 조례의 내용, 현행 조례 규정의 표현 형식, 용어, 조문의 배열과 표현수위 등을 중심으로 검토·자문을 받았음. 그 밖에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나 도출된 조문안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층검토가 이루어졌음

【 표 I-1 】 조례개정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회의

차수	일시	심층논의 주제	참석자 전문분야
1차	7.27(수)	-조례 구성체계 및 개정방향 -여성경제활동영역	변호사, 법학자 여성노동연구자, 여성노동NGO
2차	8.23(수)	-소외여성 -여성인권 -가족	가족연구자, 법학연구자
3차	8.26(금)	-성 주류화 -추진체계 -거버넌스 -도시공간	법학자, 여성학연구자, 입법심의회관
4차	9. 2(금)	조례내용 전체 검토	젠더연구자, 행정학자
5차	10.14(금)	조례 전문내용 검토 및 시행규칙	법학자, 여성학자
6차	11. 2(수)	조례 전문개정안 및 시행규칙	변호사

- 내부 연구진 회의를 통한 조문안 도출
 - 내부연구진은 법학자, 변호사, 사회학자, 행정학자 등으로 구성되어 외부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토대로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조문안을 도출하고 검토하는 회의를 진행함

제 4 절 기대효과

- 성평등 개념의 도입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 현행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시대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여성의 대표성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성 주류화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제공을 통해 서울시정의 성 주류화 확산 및 강화
 - 성별영향평가 및 성별분리 통계에 대한 근거규정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또한 성 주류화 제도 간의 연계시행 및 성인지교육 등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성 주류화 제도 실행의 추진력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중앙정부 및 타 시·도, 서울시 자치구의 여성관련 법률 제·개정에 중요한 모형제시
 -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고,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에서 중앙정부의 경우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안으로 의원발의안인 「성평등기본법안」과 정부발의안인 「여성정책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¹⁾ 또한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1997년 7월 31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되어 타 시도 여성정책 근거규정 마련에 모델로서 역할을 해옴.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방안 연구는 중앙정부 및 타 시도에 중요한 여성정책 근거법률의 발전방향으로써 제시될 수 있음

1) 「성평등기본법안」은 신낙균 의원 외 42인이 2010년 6월에 ‘국가정책의 성평등 목표를 법의 제명에서부터 명확히 하고, 누락된 정책내용을 보완하고, 성평등 관련 개별법의 발전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기본법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하였음. 「여성정책기본법안」은 여성가족부에 의해 2010년 11월에 ‘국내외 여성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II

「서울시여성발전기본 조례」 주요내용과 개정방향

제1절 「여성발전기본법」과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법적 성격과 관계

제2절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과정 및 주요내용

제3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논의의 쟁점과 시사점

제4절 16개 광역 「여성발전기본조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

제5절 현행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방향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주요내용과 개정방향

제 1 절 「여성발전기본법」과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법적 성격과 관계²⁾

-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주요내용과 개정방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여성발전기본법」과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법적 성격과 관계에 대해 검토함
- ‘기본법’이라는 개념은 통상적으로 ①사회에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에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법률(실질적 정의), ②법령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법률(형식적 정의), ③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규범을 지칭하는 의미(이 경우 기본법은 헌법과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으며,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치기본법 등이 이에 속함)로 쓰임³⁾
- 이중 첫 번째 정의 - 기본적 원칙과 정책의 기준 등에 관한 법률 - 의 성격을 갖는 「여성발전기본법」은 ①실생활에 있어서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별법령들의 일련의 법, ②같은 위치에 놓인 법령임에도 어떤 특정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법령을 다른 법령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는 경우, ③어떤

2) II장의 연구내용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젠다 포럼’에서 발표된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문화·인권·안전센터장)의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방향” 원고와 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의 “국가차원 법률개정의 쟁점과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원고의 내용이 정리되어 삽입됨

3) 박영도(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20면

분야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령 등으로 달리 표현할 수도 있음⁴⁾

- 「여성발전기본법」과 같은 정책기본법은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추진 체계를 정하고, 제도·정책의 체계화·종합화를 시도하며, 정책의 일관성·계속성을 확보하고 행정을 통제하며, 국민에 대한 정책 메시지 전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
- 현재 ‘기본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법률은 2008년 현재 49개⁵⁾가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을 포함하여 이들 대부분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집중하여 제정된 것임. 지금까지 제정된 기본법을 그 제정배경과 목적, 규정내용 등으로부터 유형화하면 이념형(제도·정책에 관한 기본·이념·원칙을 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정책형(각각의 행정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제도의 목표·방향·대상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에 대하여 시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것), 대책형(일정한 행정상의 대책의 기본을 정하고 사회질서의 유지, 복지향상, 피해의 예방·구제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 개혁추진형(국정상 주요과제로 되어 있는 특정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음.⁶⁾ ‘여성발전기본법’은 이념형과 정책형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전혀 새로운 정책분야를 전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종래 정책을 발전시키고 중요도를 부각시키며 시책의 종합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된 법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여성발전기본법」의 성격은 ‘여성발전기본조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침⁷⁾

4) 조정찬(1989), 「법령 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연구」, 『법제』제268호(1989. 6.), 17면, 이하 박영도(2006), 앞의 책, 19면에서 재인용

5) 건강가정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관광기본법, 교육기본법, 국가보훈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어기본법, 국토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산림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에너지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자격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6) 박영도(2006), 앞의 글, 119~120면

7) 물론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이념적 성격은 보이지 않고 정책형 조례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고 있음. 이는 목적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국가(중앙정부)의 정책기본법 제정과 그 방향은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과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조례는 국가의 정책기본법을 준용하고 지역적 특색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을 부가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중앙정부)의 정책기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제정되거나 개정됨.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정책적 협의를 통해 국가책무를 달성하는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
- 국가의 기본법이 정책목표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프로그램적 성격의 한계를 가지는 반면 조례는 기본법의 구체적인 정책시행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그 성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임. 성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은 지역 즉, 지방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 평가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규범력을 가짐.⁸⁾ 따라서 국가 차원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을 위한 조례정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제 2 절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과정 및 주요내용

1.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과정

-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이하 ‘서울시여발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7월31일 조례 제3657호로 제정되어, 2011년 현재까지 10차례 개정되었음.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8)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경기여성연대(2010), 『경기도 성평등! 제도와 실천의 경계를 넘다- 여성발전기본법관련 조례 제·개정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참조.

【표 II-1】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과정과 주요 개정내용

	개정일	주요 개정내용
1차	200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위원회 간사가 여성개발담당관에서 여성정책담당관으로 변경(제24조제4항)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이 될 수 있는 자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추가(제33조)
2차	2001.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위원회 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제25의2) ○여성위원회의 개와 의결요건 신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7조제3항).
3차	2003.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에게 기금의 자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6항).
4차	2003.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적극 추진과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 지원 항목 신설(제15조제5항)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예산실장과 여성정책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에서 여성정책업무관련 시소속 국장급이상 공무원 2인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변경(제24조) ○여성위원회 간사가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여성정책담당과장으로 변경(제24조) ○여성위원회에 분과위원회 구성 범위가 남녀평등·사회참여·여성복지·연구조사 등에서 여성정책·남녀평등·사회참여·여성복지로 변경(제29조)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행정(1)시장에서 여성복지국장으로 변경,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과 여성정책관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보건복지국장,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여성위원회 위원, 여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변경(제33조)
5차	2004.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정적 우대조치를 적극적 우대조치로 변경(제4조) ○성별영향평가 관련 항목 신설(제8조제2항), 여성채용목표제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변경(제11조)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부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책 강구 조항 신설(제15조제6항) ○여성위원회 위원장이 1인에서 공동위원장 체제로(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 변경(제24조) ○제35조(사전협의) 신설: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 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차	2005.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을 복지여성국장에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변경(제33조)
7차	2006.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제14조제4항)
8차	2007.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의 의무주체를 지방공무원교육원장에서 인재개발원장으로 변경
9차	2007.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적극적 우대조치 대상 관련 조항의 변경(제4조)
10차	2008.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처의 변경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표기 변경(예컨대 여성발전기본법을 「여성발전기본법」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변경)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행정 1부시장을 시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 중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을 1명으로 하여 부위원장의 총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함(제24조)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제3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제정 이후 10차례 개정되긴 했지만 제정 당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음. 조직변경 등과 같은 일부 형식적인 개정을 포함하여 여성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관련, 여성발전기본법 개정과 연동한 성별영향평가, 성매매여성보호, 가족관련 등의 조항이 신설된 것이 전부임

2. 현행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구성과 주요내용

- 현행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5개의 장(1장 총칙, 2장 여성정책, 3장 여성위원회, 4장 여성발전기금, 5장 보칙) 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제1장 총칙

- 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 시 및 시민의 책무, 적극적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기본조례의 목적은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음
 - 시의 책무로, 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함
 - 시민의 책무로,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극적 우대조치는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시장·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에서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여성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나, 단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를 ‘우대’로 표현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특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2) 제2장 여성정책

- 2장은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정책분석, 자문기구의 설치와 여성정책의 내용으로 시정참여 확대, 공직 등에의 참여 촉진, 남녀평등의식 제고, 성차별

개선, 경제활동지원, 복지증진, 아동보육,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단체의 지원, 자원봉사활동, 국제협력지원과 의견수렴 창구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여성정책의 시행계획에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주요정책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맞벌이 부부·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여성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그 밖의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담은 것을 정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대한 성별 분리 표기를 시행(통계·자료의 성별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여성정책의 시행 및 그 결과를 포함한 여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고 시민에게 최신 정보의 제공, 이를 위한 서울여성백서의 발간을 규정함으로써 여성관련 정보 제공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구·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자치구와 소속기관의 여성정책 추진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서울시 여성정책의 추진 및 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점검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여성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시민의 참여 확대, 행정과정에서 여성공무원의 참여 확대,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규정하고 있음

○ 여성정책의 주요내용으로 성차별 개선, 경제활동지원, 복지증진, 아동보육을 포함하고 있음

- 성차별 개선 등 규정에서,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 확립을 규정함. 피해사례의 예방 및 발생시 처리를 위한 창구운영과 조치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경제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여성의 취·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방안 강구,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매 촉진,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 우대, 여성의 임신·출산·양육기간 동안의 보호와 불이익 금지,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등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여성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정책추진, 요보호 취약여성(미혼모·가출여성·성매매)에 대한 지원,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직업훈련 및 재활지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책 강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방과 후 보육확대 등 아동보육 시책확대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경비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개별법규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보호 및 지원 규정의 보완이 필요함

○ 여성정책의 내용으로 이외에도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단체의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국제협력지원, 유공자 표창 규정을 두고 있음

- 관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여성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운영 규정을 둬. 그리고 단체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지원 및 예산은 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함
-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하여,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을 명시하고, 국제협력 지원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참여 확대, 국제협력 활동 지지를 포함하고 있음
- 유공자 표창과 관련하여, 여성정책의 목표달성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 규정을 두어 여성정책의 추진 동기가 됨

3) 제3장 여성위원회

○ 여성정책의 추진체제로 여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분과위원회 및 운영세칙의 내용을 포함함

- 여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위원의 자격 및 위촉, 간사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역할과 직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26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함. 도중에 해촉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에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는 의견청취 등의 권한을 가지는데,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회와 관련이 있는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분과위원회 규정을 두어 소관사항에 대한 분야별 연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여성정책, 남녀평등, 사회참여, 여성복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4) 제4장 여성발전기금

○ 4장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규정으로 기금의 설치, 용도, 관리·운용 관련 조항을 두고 있음

-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정하고, 재원의 조성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두며, 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심의 운영사항을 정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현행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구조 및 주요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Ⅱ 표 Ⅱ-2 Ⅱ 현행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구조와 주요 내용

분류	조문	주요내용
I. 총론 목적	제1조 (목적)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II. 책무	제2조 (시의 책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

분류		조문	주요내용
		제3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
		제4조 (적극적 우대조치)	관계법령에 따른 합리적 범위 안에서 적극적 조치
III. 여성 정책 추진	시행계획수립	제5조 (여성정책 시행계획수립)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정책분석	제10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자치구·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 여성정책 추진실적 평가, 경영평가에 반영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평가 의무(성별영향평가)
		제6조, 제7조 (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등)	각종통계와 자료에 성별 구별 표기, 정보제공, 서울여성백서 발간
	자문기구	제23조 (서울시 여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시장 자문기구 설치
IV. 여성 정책		제10조 (시장참여확대)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정수의 여성 비율 30%이상
		제11조 (공직 등에서의 참여촉진)	한시적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 채용 공고 시 여성응시 장려 명시 여성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 육아휴직제도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
		제12조 (남녀평등의식 제고)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남녀평등교육 관련 사업추진·지원 여성공무원의 재교육 장려 및 재교육프로그램 제공 교육기간이 2주이상인 교육과정에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 및 여성공무원 대상 전문교육과정 연2회 편성·운영
		제13조 (성차별개선 등)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금지·예방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접수·처리 창구 운영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성차별 및 성희롱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제14조 (경제활동 지원)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 지원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구매촉진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있어 여성기업 우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와 이로 인한 불이익 금지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노력
		제15조 (복지 증진)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 요보호 취약여성(미혼모·가출여성·성매매) 지원

분류		조문	주요내용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설확충 여성장애인의 교육·직업훈련 및 재활 지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 맞벌이부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책 강구
		제16조 (아동보육)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방과후 보육확대 등 아동보육 시책 확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제17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여성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운영
		제18조 (단체지원)	행정지원, 예산과 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 지원
		제19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제20조 (국제협력)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참여 확대, 국제협력활동 지지
		제21조 (의견수렴창구 운영)	여성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운영, 시정에 반영 의견제안자 포상
		제22조 (유공자 표창)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
VI. 여성 발전 기금	근 거	제31조 (기금의 설치 등)	재원·운용
	용 도	제32조 (기금의 용도)	1.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4.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운 용	제33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설치
VII. 보칙		제34조 (사무의 위탁)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
		제35조 (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 할 때 여성정책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결과 통보.

제 3 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논의의 쟁점과 시사점

1.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논의의 배경

-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공포되어 1996년 7월1일부터 시행⁹⁾됨에 따라 이 법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임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이에 따른 기본조례의 제정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수립과 예산 수립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음.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한국여성의 삶은 제도의 발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1996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되고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1997년 당시와 비교하면, 여성의 교육수준은 높아졌고, 성별 임금격차도 감소되어 옴. 또한 여성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고 국가공무원 고시 등의 여성합격률은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여왔음
- 그럼에도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립정도를 알 수 있는 경제활동참가율은 정체 상태에 있고,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M자 곡선을 유지하고 있음.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에 여성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의 비정규직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존재함. 성별에 의한 소득불평등은 여전히 큰 차이로 존재하고, 여성의 비공식부문 고용이 남성의 약 두 배에 이르고 있는 현실임
- 또한 성별임금격차는 축소되었지만, OECD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고, 여성

9) 여성발전기본법 제정배경에 대해서는 박선영 외(2009),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국회여성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음.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아졌다고 하나, 여성근로자 중 약 38%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근로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을 가지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음¹⁰⁾

- 2010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개발지수(GDI)는 155개국 중 25위로 인간개발지수(HDI) 12위보다 낮고, 성평등 수준을 가리키는 여성권한척도(GEM)는 세계 109개국 중 61위에 불과함. 이는 여성의 개발된 능력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인데 비하여 정치참여, 소득비, 고위직·전문직 등에서의 여성 참여는 세계적으로 하위권임을 의미하는 것임. 문제는 이러한 간극이 UNDP에서 지표가 처음 만들어진 1995년 이래로 현재까지 명확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임.
-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이 2006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06년 92위, 2007년에 97위, 2008년에 108위, 2009년에 115위, 2010년에는 134개국 중 104위로 조금 상승했지만, 여전히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음. 세계화, 정보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여성의 약진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는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음.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한 여성관련 법률이 현실에서 규범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여성친화적 구조로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다른 한편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조례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법적 근거로 작용해 왔음. 그러나 빠르게 변화했고, 변화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즉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여성발전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남녀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접근으로, 더 나아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의 성 주류화 전략으로 변화되어 왔지만, 이런 환경을 「여성발전기본법」과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음

10)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변화된 현실과 변화되지 않은 여성의 현실에 대해서는 박선영 외(2008) 참조.

-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현재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2005년부터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개정논의가 급부상하게 된 계기는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여성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면서 부터임
- 현재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으로 정부입법인 「여성정책기본법」과 신낙균 위원이 대표발의 한 「성평등기본법」이 계류 중에 있음. 이처럼 「여성발전기본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은 지방정부에게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음

2.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

- 정부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두 가지 개정 법률안, 즉 「여성정책기본법안」(정부안)과 「성평등기본법안」(신낙균의원안)의 구조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여성정책기본법안」은 총6장, 제52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총칙에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음
 - 제2장은 여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장으로 크게 여성정책의 수립과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두 절로 구성됨.
 -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여성 관련 실태조사, 성별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여성정책 추진체계로 여성지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 심의 결과의 통보와 반영,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을 담고 있음
 - 제3장은 여성정책의 추진에 관한 장으로 크게 여성참여의 확대,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의 세 절로 구분하여 각 절에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조문으로 포함하고 있음
 - 제1절 여성참여의 확대와 관련하여, 적극적 조치, 정치·행정 참여, 공공기관의

임원 및 위원회 참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일-가정 조화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제2절은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과 관련한 것으로 최근의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성평등지수의 작성과 발표, 법령·정책·예산에 대한 성인지 분석·평가,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의식 제고, 성평등문화 조성,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여성주간, 여성친화도시, 국제협력, 정책분석·평가기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함
- 제3절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하여 성희롱 및 여성폭력 방지, 모성보호의 강화, 여성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법률구조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제4장은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장으로 기금의 설치·용도·회계기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제5장은 여성관련시설 및 여성단체 지원에 관한 장으로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의 설립,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주관기관의 지정,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단체 등의 지원과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제6장 보칙에는 여성정책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성차별시정소위원회, 권한의 위임·위탁을 규정하고 있음

○ 「성평등기본법안」은 총7장 제55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기본이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여성정책기본법안」의 총칙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제2장은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장으로 여성정책이 아닌 성평등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음. 크게 기본계획의 수립,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두 개 절로 구분하고 있음
 - 1절의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성평등지수 작성과 발표, 업무협조를 규정하고 있음
 - 2절에서는 추진체제로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규정을 두고 전 정부부처의 성인지 관점의 반영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이 외에도 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성평등정책담당관 지정 등 규정과 성평등 주간을 정하고 있음

- 제3장은 성차별의 금지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규정한 장으로 ‘성차별 금지 등’, ‘성평등 촉진시책’, ‘성평등 효과 증진’의 세 절로 구분되어 있음
 - 1절의 성차별 금지 등에서는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진정 등, 성차별시정소위원회, 준용규정, 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 소송지원 규정 등을 포함하여 성차별 금지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일상적 생활에서 성차별 해소를 통한 성평등 달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적극적 조치, 동등한 정치참여 및 경제활동 참여 등, 가족·사회생활 양립지원, 평등한 가족생활, 모성의 권리보장, 성평등 의식 제고, 성평등 문화조성,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성희롱의 방지, 취약계층 여성권의 보호, 성평등관련 국제조약의 체결 및 이행, 평화·통일 과정의 여성참여 증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3절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인지 교육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제4장은 성평등 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성평등 기금의 설치와 용도, 회계기관을 정하고 있음
- 제5장은 성평등 관련시설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장으로 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설치·운영 및 취소,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제6장은 보칙으로 국회에의 보고, 성평등 관련 조사와 정보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규정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II-3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구조와 내용비교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2조(정의)
제3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4조(국민의 책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여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장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여성정책의 수립	제1절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협조)	제9조(국가성평등지수의 작성과 발표)
제10조(여성 관련 실태조사)	제10조(업무의 협조)
제11조(성별 통계의 작성·보급)	
제2절 여성정책 추진체계	제2절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12조(여성지위위원회)	제11조(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
제13조(여성지위실무위원회)	제12조(성평등정책 실무위원회)
제14조(심의 결과의 통보 및 반영)	제13조(전문위원회의 설치)
제15조(여성정책책임관 등의 지정)	제14조(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성평등정책담당관의 지정 등)
	제15조(성평등주간)
제3장 여성정책의 추진	제3장 성차별의 금지 및 성평등 촉진 등
제1절 여성 참여의 확대	제1절 성차별 금지 등
제16조(적극적 조치)	제16조(성차별 금지)
제17조(정치 참여)	제17조(성희롱 금지)
제18조(공직 참여)	제18조(진정 등)
제19조(공공기관 임원 참여)	제19조(성차별시정소위원회)
제20조(위원회 참여)	제20조(준용규정)
제21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제21조(권고의 통보)
제22조(일·가정 조화 지원)	제22조(시정명령)
	제23조(시정명령의 확정)
	제24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5조(소송지원)
제2절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제2절 성평등 촉진 시책
제23조(성평등지수의 작성과 발표)	제26조(적극적 조치)
제24조(법령·정책에 대한 성인지 분석·평가)	제27조(동등한 정치 참여 등)
제25조(예산에 대한 성인지 분석·평가)	제28조(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등)
제26조(성인지 교육)	제29조(가족·사회생활 양립지원) 국
제27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제30조(평등한 가족생활)
제28조(성평등 문화의 조성)	제31조(모성의 권리 보장)
제29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제32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제30조(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제33조(성평등 문화의 조성)

제31조(여성주간)	제34조(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등)
제32조(여성친화도시)	제35조(성희롱의 방지 등)
제33조(국제협력)	제36조(취약계층 여성 권익 보호 등)
제34조(정책분석·평가기관 설치 등)	제37조(성평등 관련 국제조약의 체결 및 이행 등)
	제38조(평화·통일과정의 여성참여 증진)
제3절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제3절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제35조(성희롱의 방지 등)	제39조(성 주류화 조치)
제36조(여성폭력의 방지 등)	제40조(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제37조(모성 보호의 강화)	제41조(성 인지 예산)
제38조(여성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제42조(성 인지 통계 등)
제39조(법률구조 지원)	제43조(성 인지 교육)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4장 성평등 기금
제40조(기금의 설치 등)	제44조(기금의 설치 등)
제41조(기금의 용도)	제45조(기금의 용도)
제42조(기금의 회계기관)	제46조(기금의 회계기관)
제5장 여성정책 관련 시설 및 여성단체 지원	제5장 성평등 관련 시설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제43조(한국여성평등진흥원의 설립 등)	제47조(성평등 관련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제44조(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48조(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제45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49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제46조(지정취소 등)	제50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청문)	제51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제48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제49조(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50조(여성정책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제52조(국회에의 보고 등)
제51조(성차별시정소위원회)	제53조(성평등 관련 조사와 정보화)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제55조(과태료)

3.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논의의 쟁점과 시사점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이 밝히고 있는 개정이유와 개념정의, 추진체계 등에 대한 각각의 제안점을 중심으로 드러나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두 법안의 구체적인 차이와 각각의 지향점을 분석하고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함

1) 개정이유

□ 여성정책기본법안

- 국내외 여성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소관부처의 기능적 역할을 재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특히 여성정책 환경 변화 반영, 여성정책 추진체계 정비, 다양한 시책 마련 등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이 필요함을 제시함
- ‘여성정책기본법안’이 밝히는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음.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성인지(性認知) 및 평등가치의 증시 등 국내외 여성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여성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법령·정책 등에 대하여 성인지 분석·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¹¹⁾

□ 성평등기본법안

- 「성평등기본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이 보다 강력히 구현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를 통한 자기실현과 가족과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¹²⁾

11)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9854, 제출연월일: 2010.11.9, 제출자: 정부, p.1.

○ 세부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음.

- 각국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정치참여, 소득비, 고위직·전문직 등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관련하여 세계 109개국중 61위(젠더권한척도)로 하위권을 기록. 또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 92위, 2007년 97위, 2008년 108위, 2009년 115위로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이러한 낮은 성평등 수준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국가인 한국의 위상과도 맞지 않으며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옴. 따라서 성평등 이념을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국내외 여성정책의 중심이 여성중심의 정책접근에서 젠더중심의 정책과 성 주류화 전략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전히 여성중심의 정책접근에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의식¹²⁾
-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체계는 관련 개별법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등 여성정책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에 한계를 보임. 따라서 성평등 관련 개별법의 발전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명실상부한 기본법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다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 2005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사라진 성차별 개념을 시대에 맞게 재정의하고 모든 영역에서의 성차별 금지, 인권보호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등을 이루고자 함

- 「성평등기본법안」은 성별격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은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성불평등이라는 장애물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이같은 성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성능력발전’을 목표로했던 「여성발전기본법」을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관점을 반영한 「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부개정이 필

12)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652, 발의연월일: 2010.6.23, 발의자 신낙균 외 42명, p.3.

13) 박선영 외(2009),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토론회』 자료, 국회여성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p. xvii.

요함을 분명히 함

2) 개념정의 및 추진체계

□ 법률제명: ‘여성발전’에서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으로

○ 「여성정책기본법안」

-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후 여성정책을 둘러싼 제반환경이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여성의 지위변화에는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고, 성평등·성 주류화 등에 대한 이해와 수준도 높다고 하기 어려움.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의 잠재적 수혜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책의 범위나 추진부서 등이 모호해 질 우려가 있음¹⁴⁾
- 가치지향적인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을 정하면 취약계층여성이나 지역여성 단체지원이 모호해짐. 이러한 현실적 필요에서 「여성정책기본법안」으로 제안함
- 정부제출안은 제명을 「여성정책기본법」으로 하여, 정책의 성 주류화를 추구하지만 ‘여성의 발전’ (Women in Development, WID)을 더욱 강조하고 전통적인 여성정책의 내용에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음

○ 「성평등기본법안」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성평등’, ‘성 주류화’로 이전되면서 단순히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남녀가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과 의무를 함께 나누는 실질적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정책기본법」이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소극적 개념임. 무엇보다 ‘여성정책’에서는 국가가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하는 기본법으로서의 목표와 지향이 잘 드러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여성정책’이라고 하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 여성만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역차별 논의의 심리적 근거를 제공할 가능성으로 인해 성별격차를 좁히고 성평등을 구현한다는 이 법의 궁극적인 목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함

14) 박선영 외(2009), 위의 책, p. xv.

- 따라서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성평등 목표를 법의 제명에 서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신낙균의원안은 「성평등기본법」을 제명으로 하여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젠더와 발전’(Gender and Development)을 강조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한 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성평등’ 및 ‘여성정책’의 정의

○ 「여성정책기본법안」

- 「여성정책기본법안」에서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 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받는 것¹⁵⁾을 의미하며, 「여성정책기본법안」은 성평등을 “평등한 기회의 보장”등과 같이 보다 협소한 의미로 접근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여성정책의 정의에서 여성정책의 일부로 ‘성평등’을 언급하고 있음

제3조(정의) 1. “여성정책”이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의 촉진, 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¹⁶⁾

○ 「성평등기본법안」

- 「성평등기본법안」은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¹⁷⁾”라고 정의 함. 이와 같이 성평등 개념과 관련하여 「성평등기본법안」은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를 누리는 보다 폭넓은 의미로 접근하고 있음
- 이러한 성평등 개념은 UN과 OECD의 성평등 개념에 가까움. UN에서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여성·남성, 소녀·소년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는 권리와 책임과 기회를 의미함. 이때 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동일해짐을 의미하

15)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9854, 제출연월일: 2010.11.9, 제출자: 정부, p.8.

16)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9854, 제출연월일: 2010.11.9, 제출자: 정부, p.7-8.

17)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낙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2, 발의연월일: 2010.6.23, 발의자 신낙균 외 42명, p.7.

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권리, 책임, 기회가 그들의 성이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사실에 좌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함¹⁸⁾. OECD에서는 '성평등이란 사회적 가치가 내포된 재화와 기회, 자원, 보상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누리는 것을 의미함. 여성과 남성은 이미 불평등하기 때문에 양성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은 성평등의 전략으로 부족함. 불평등한 상황에서의 동등한 대우는 차별을 지속시키는 것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임. 따라서 성평등이 실현되려면 차별이 강화 및 유지되는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관행이 바뀌어야 하고 여성이 여성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낼 필요가 있음'¹⁹⁾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추진체계

○ 「여성정책기본법안」

- 본 법에서는 여성정책의 추진체계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지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여성지위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여성지위위원회에 조정기능을 배제한 심의기능만 부여하고 있어 현행법보다 후퇴한 측면이 있고, 연간 1~2회 열리는 총리급 위원회 회의를 고려할 때 형식상 회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추진체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임
- 또한 중앙행정기관, 시·도의 여성정책 수행을 위한 '여성정책책임관' 지정을 규정하고 있음

○ 「성평등기본법안」

- 「성평등기본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전 부처의 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조정·심의기능을 부여함
- 「성평등기본법안」의 추진체계인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는 전 부처의 성평등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성인지 예산 제도 등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들을 보다 강력히 견인해낼 것으로 보임. 하지만 총리급 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8) UN WOMEN, OSAGI Gender Mainstreaming 2001, <http://www.un.org/womenwatch/osagi/conceptsanddefinitions.htm>

19) OECD, DAC 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http://www.oecd.org/dataoecd/56/46/28313843.pdf> p.13.

-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 내에 상설조직으로 ‘전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여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이행의 점검과 평가, 그 밖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정하고 있음. 또한 실무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실무기구를 두고 있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전문위원회와 같은 실무기관의 뒷받침도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중앙부처, 시·도 각 지방정부 기관은 기관의 성평등정책책임관과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함

○ 현행 「여성발전기본법」과 개정안인 「여성정책기본법안」 및 「성평등기본법안」이 제안하고 있는 각 추진체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4 「여성정책기본법안」 및 「성평등기본법안」 추진체계 비교

구분	여성정책조정회의 (현행)	여성지위위원회 (정부안)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 (신낙균의원안)
지위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
기능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여성정책 심의·조정	조정 기능 삭제	성평등정책 심의·조정
구성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국무총리가 의장,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의장)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국무총리가 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위원장
실무기관	여성정책실무회의	여성지위실무위원회	성평등정책실무위원회 상설전문위원회

자료 : 차인순(2011a),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3) 기금

- 「여성정책기본법안」
 - ‘여성발전기금’의 현행 기금명 유지
 -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지원, 여성단체 사업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지원,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 지원, 성차별 및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성평등 실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성평등기본법안」

- 성평등 기금으로 기금명 변경
-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본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본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비영리단체 사업 지원, 성차별·성희롱 및 성별을 이유로 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등 법률구조사업 지원, 국제협력 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4) 「여성정책기본법안」 및 「성평등기본법안」의 쟁점사항 비교

【표 II-5】 두 법안의 쟁점사항에 관한 비교 표

구 분	정부제출안	신낙균의원안
제명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정의 규정	성평등, 성인지 등 신설	성평등, 성차별 신설, 성희롱 개념 확대
여성정책추진체계	여성지위위원회(민관공동위원장) 여성지위실무위원회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전문위원회) 성평등정책실무위원회
	중앙부처, 광역지자체에 여성정책책임관 지정	중앙부처, 지방정부 기관의 성평등정책책임관, 성평등정책담당관 지정
여성 참여 확대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및 조치결과 제출 의무화, 위원회 구성 시 성별로 균형 있는 참여 권고	공공기관의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60% 초과 금지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근거 마련	규정 없음
국제협약 이행 보고서등 사전 국회보고	규정 없음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의 제출 시 사전 국회 보고
성 주류화 조치	관련 규정 산재해 있음	성 주류화 조치 관련 절 신설
법률구조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희롱, 성차별 피해자 지원
기금	여성발전기금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성차별 및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명시	성평등기금 성차별, 성희롱 및 성별을 이유로 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명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양성평등진흥원으로 변경	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변경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주관기관	지정 근거 마련	규정 없음
폭력 예방 교육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 교육 실시
성차별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시정소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진정, 성차별시정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규정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3개월

자료 : 차인순(2011a),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재구성

5)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논의의 시사점

- 동 조례의 목적과 구성에 기본이 되는 기본법은 정책방향제시와 추진체계를 보여주는 것임. 1995년에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광의의 성평등을 위한 다수의 개별법 또는 조항들이 각 부처에 산재해 있고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임
- 지역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필요성을 간파하고 「여성발전기본조례」 속에 지역 상황에 부합한 기본법과 개별법의 주요 조항을 담아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현재 경기도는 이미 2010년 11월 8일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부분적으로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한 추진체계 및 정책근거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음
- 현행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정책 모델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지며 따라서 사회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미래의 여성정책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전향적인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함
 - 서울시에서는 2008년 9월 일부개정작업이 있었으나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성발전’ 패러다임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가족과 사회 속에서 젠더관계, 다양한 가족, 신취약계층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음
 - 현시점에서 제안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가족과 사회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 성 주류화를 위한 추진방법, 추진체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함

제 4 절 16개 광역 「여성발전기본조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²⁰⁾

- 현행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방향을 도출함에 있어서, 16개 시·도 관련 조례와 국회에 계류 중인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개정안인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조례 명 및 총칙

1) 조례 명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제명은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임
 - 1997년 제정당시의 제명으로 여성정책 발전 초기 여성중심의 정책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여성정책 목표로서 제명에서 성평등 지향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

□ 타 시·도 및 관련 법안 검토

- 16개 시도의 조례 명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성평등기본조례」이며,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여성발전조례」, 충청북도의 경우 「여성정책기본조례」이고, 그 외 광역지방정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로 명칭하고 있음
-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안으로 제안된 두 개 법안은 각각 제명을 「여성정책기본법안」(정부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원안)으로 하고 있음
 - 「여성정책기본법안」은 본 법이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목적규정 및 정의규정 등을 보완하고 있음
 - 「성평등기본법안」은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고,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정책의 성평등 목표를 법의 제명에서부터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해 그동안 누락된 정책내용을 보완하고

20) 서울여성가족재단(2011), 『2011아젠다포럼-여성부문: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방향’ 제1차 회의결과』 자료집.

성평등 관련 개별법의 발전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한다는 취지임

□ 개정방향

-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여성정책 부서가 서울시 성평등 수준을 책임지는 부서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을 가질 필요가 있음²¹⁾. 또한 여성정책의 목적이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한 환경 조성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목적과 시의 책무

□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관련 규정으로 목적(제1조), 시의 책무(제2조)로 되어 있음
 - 조례의 설치목적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두고 있음

조 문	내 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 문제점

- 목적 규정: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 여성정책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실제 목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시의책무 규정: 시의 책무로서 제시된 조문이 강제규정의 의미가 약함. 또한 정책추진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원마련 방법이 없어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21)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경기여성연대(2010), 『경기도 성평등! 제도와 실천의 경계를 넘다: 여성발전기본법관련 조례 제·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 타 시·도 및 관련 법안 검토

- ‘목적’ 관련 조문에서 조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도로는 울산광역시와 경기도를 살펴볼 수 있음
 - 울산광역시(제1조)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기도(제1조) “이 조례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목적 규정 검토
 - 「여성정책기본법안」은 성평등 이념 실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법의 수행주체와 수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성평등기본법안」 역시 헌법의 성평등 이념 실현을 명시하고, 수행주체, 대상 영역과 범위에 있어서 성차별 금지, 성평등 촉진, 성별 격차 해소,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음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여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정부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대부분 시·도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취할 것을 책무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음
 - 특별히 시·도의 책무로 교육 및 홍보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예로는 대전광역시(제3조)와 제주도(제3조)가 있으며, “시·도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경우 모두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단, 「여성정책기본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추진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음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또한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에 포함된 법안 중 추진주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및 재원마련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및 재원마련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보고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성평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제23조 성평등지수의 작성과 발표 지역의 성평등 정도 지수화를 위한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공표	제9조 국가 성평등지수의 작성과 발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 작성·발표
제11조 성별 통계의 작성·보급 성별통계의 작성, 보급, 활용	제42조 성인지 통계 등 성 인지 통계의 산출, 보급
제15조 여성정책책임관 등의 지정	제14조 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성평등정책담당관의 지정 등
제16조 적극적 조치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적극적 조치 실시	제26조 적극적 조치 특정 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적극적 조치 실시
제17-20조 정치, 공직, 공공기관 임원, 위원회 등에 성별균형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시책마련	제27조 동등한 정치활동 참여
제21-22조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일·가정조화 지원	제28-29조 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및 가족·사회생활 양립지원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제29조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마련	제30조 평등한 가족생활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마련
제37조 모성 보호의 강화 모성관련비용의 사회적 부담 증가를 위한 노력	제31조 모성의 권리보장 모성관련비용의 사회적 부담 증가를 위한 노력
제27조 성평등 의식의 제고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실시	제32조 성평등 의식의 제고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실시
제28조 성평등 문화의 조성 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발굴·추진	제33조 성평등 문화의 조성 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사업발굴·추진
제36조 여성폭력의 방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구제를 위한 시책마련	제34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등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보호시책 마련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인권통합교육 실시
제35조 성희롱의 방지 성희롱피해자 보호 시책 마련	제35조 성희롱 방지 성희롱 피해자 보호 시책 마련
제38조 여성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여성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시책마련	제36조 취약계층 여성 권익보호 한부모, 장애인, 비정규직,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 여성권익보호
제33조 국제협력 국제회의 여성참여 확대, 개발도상국의 성평등 실현과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교류활동 지원, 국내외 한민족 여성 간 교류와 연대강화를 위한 시책마련	제37조 성평등 관련 국제조약의 체결 및 이행 등 국제조약 이행을 위한 시책 강구
제5조 2항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추진과정 여성의 참여와 역할 증대	제38조 평화·통일과정의 여성참여 증진 평화·통일과정의 여성참여와 역할 증대를 위한 시책 마련
제24-26조 법령·정책·예산에 대한 성인지 분석·평가, 성인지 교육 실시	제39-43조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제45조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경비보조 제46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7조 성평등 관련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성평등 관련 시설 및 기관 운영, 예산지원 제50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8조 여성단체 등의 지원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지원 및 경비 보조	제51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성평등과 관련된 학계 및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에 적극 협력

- 두 법안의 지방자치단체 책무규정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 단지 규정의 내용상 우선적 고려사항에 대한 조문배열과 구체성을 명시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 또한 두 법안 모두 가장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 통계, 성인지교육, 국가 성평등 지수 작성, 성평등 책임관 지정, 성희롱·여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²²⁾

□ 개정방향

- 조례목적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함
 - 조례의 설치 목적과 여성정책의 목표, 추진주체의 명시와 조례 적용의 대상범위 등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함. 다만, 조례의 목적 규정은 ‘제명’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므로 제명과 목적과의 분명한 연관성이 필요함

- 의무규정으로 시의 책무를 제시하고, 재원조달 방법 명시 필요
 - 현재 시의 책무를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강제규정의 의미가 약하여, 조례의 구속력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시의 책무에 대한 명백한 강제규정의 형식으로 표현수준을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명시가 필요함

3) 체계와 구성

□ 현황과 문제점

- 각 조항의 배열과 체계
 - 현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제2장 ‘여성정책’에 여성정책과 성주류화 정책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분류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제7조와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8조 2항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규정 등이 여성정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

□ 타 시·도 및 관련 법안 검토

- 16개시도 법률체계는 대부분 총칙과 여성정책(여성정책기본시책, 성평등 정책), 여성정책위원회, 여성발전기금,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특성에 따라 여성상이나 사랑방 운영, 여성·가족친화도시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한 장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음

22)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경기여성연대(2010), 위의 책.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광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충청북도 여성정책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2장 성평등 정책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4장 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성평등정책조정회의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6장 경기도여성상 제7장 경기도여성인력개발 협의회 제8장 보칙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시행계획 등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여성발전위원회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6장 강원여성상 및 평등 문화상 제7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제8장 여성사랑방 제9장 보칙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가족친화도시 기반시설 조성 제4장 여성발전위원회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6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제6장 보칙

□ 개정방향

- 여성정책과 성 주류화 정책내용을 분리하여 규정 필요

2. 여성정책

1) 여성경제활동

□ 현황과 문제점

○ 관련조항

- 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의 3. 주요정책 중 나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목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14조(경제활동지원) 조문이 있음

제14조(경제활동지원)

- ①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③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 ④시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문제점

- 현행 서울시 여성경제활동 분야의 조례내용이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에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만이 제시되어 있어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정책시행의 근거규정이 너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규정내용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활동지원의 대상은 기업인 여성뿐 아니라, 취업여성과 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구체적 내용으로는 모든 경제활동에의 동등 참여를 위한 권리 보장, 일-가정 양립 지원,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인적자원 개발,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등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내용의 수준 또한 다른 조문들과 비교하여 너무 구체적이어서 다른 조항들과의 수위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타 시·도 및 관련 법안 검토

- 타 시·도의 여성경제활동지원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부산시의 경우 ‘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관련 조항을 명시화하고 있음. 또한 부산시의 경우에는 여성경제활동관련 조항의 내용이 제14조(모성보호의 강화), 제15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등), 제16조(경제활동지원 및 여건조성), 제17조(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제18조(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되고 있음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관련조항 비교

- 「여성정책기본법안」은 제21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와 22조(일-가정 조화 지원)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내용으로는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조치에 관한 규정,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 및 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과 대우의 평등 보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일-가정 조화 지원과 관련하여, 보육시설, 가족친화제도, 방과후 보육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성평등기본법안」에서는 제28조(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등)과 제29조(가족·사회생활 양립지원)로 구분하고 있음. 내용은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유사하나, 주로 경제활동참여 기회, 근로조건, 특히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족-사회생활 양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조하고 있음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p>제21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직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활동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22조(일·가정 조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의 강화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28조(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기회와 근로조건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이 실시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이 경제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을 적극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 및 기업운영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29조(가족·사회생활 양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성과 여성이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의 실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 개정방향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의 신설 필요
 - ‘일·가정양립’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고, ‘성평등 및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비정규직을 포함한 여성의 지속적 고용보장 지원’ 등의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
- 경제활동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필요
 - 여성기업인 뿐 아니라, 취업여성 및 취업을 원하는 미취업여성,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그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
-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직업훈련 등의 규정 필요
 - 예를 들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이렇게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내용을 조례에 부각시킬 필요 있음

2) 소외여성지원

□ 현황과 문제점

○ 관련조항

- 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의 3. 주요정책 중 라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목 “맞벌이부부·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15조(복지증진) 규정이 있음. 제15조(복지증진)의 규정 내용은 소외여성 발생 예방, 소외여성의 자립과 이를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15조(복지증진)

- ②시장은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시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직업훈련 및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시장은 성매매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립할 수 있도록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소외여성의 범주에 미혼모, 가출여성,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성매매 요보호여성 등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상계층의 등장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예를 들어 이주여성, 새터민 여성, 비정규직여성, 빈곤층여성 등이 제외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함
- 가출여성, 성매매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점이 선도 및 요보호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음. 제15조(복지증진)의 ②“가출여성”, “선도”, ⑤“성매매 요보호여성” 등과 같은 표현은 삭제되어야 함. 또한 제5조3의 주요정책 중, 라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은 “취약계층여성의 역량강화 및 지원”으로 개정하고, 마목의 “편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으로 용어변경이 필요함
- 미혼모,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성매매여성, 한부모, 이주여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법 규정이 필요함. 또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 계층의 여성에 대한 지원인지 불분명하므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여성노인과 관련한 정책을 필요한 시설확충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100세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역시 교육·직업훈련·재활 지원을 넘어서 그들의 모성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보장 등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함

□ 타 시·도 및 관련 법안 검토

○ 타 시·도 관련 조항의 특징

- 주로 소외여성은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조문에서 다루고 있으며, 소외여성의 범주를 저소득 모·부자 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의 단위에서 접근하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복지증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관련조항 비교

- 「여성정책기본법안」에서는 여성의 복지수요를 단지 경제적 취약 상태 뿐 아니라 지역, 나이 등의 차이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복지대상의 범주를 저소득 한부모가족, 여성장애인, 북한이탈여성, 결혼이민여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관점이 정부의 보호 측면에 머물러 있어, 정책 대상자들을 수동적 수혜자로 위치시키고 있음
- 「성평등기본법안」에서는 한부모, 장애인, 비정규직,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아동·청소년·노인 등의 신취약계층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소외계층여성에 대한 정책의 관점을 복지보다는 여성의 권익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제38조(여성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노인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여성 장애인, 북한이탈여성, 결혼이민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취약계층 여성 권익 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장애인·비정규직·북한이탈주민·이주민·아동·청소년·노인 등 취약계층의 여성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개정방향

- ‘요보호’, ‘편부모’, ‘선도’ 등과 같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들을 정리하면서,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정부의 가부장적 보호가 아닌 기본 권익 확보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상자 범위의 확대에 따라 관련 조문이 이러한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즉 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여성, 빈곤여성 등은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등장한 주요 취약계층 여성으로 조문에 지원을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3) 보육 및 가족

□ 현황과 문제점

○ 관련 조항

- 가족관련 조문은 제15조의 ⑥항이며, 아동보육관련 조문은 제16조(아동보육)의 ①, ②항을 들 수 있음. 규정내용은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지원과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실제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마련, 지원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제15조(복지증진)

⑥시장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 부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아동보육)

①시장은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방과 후 보육확대 등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아동보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문제점

- 현재의 가족 관련 조문의 내용에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부족하고, 성평등한 가족문화확산을 위한 시책 규정이 없음. 또한 여성정책에서 ‘보육’문제는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남녀 간의 공동분담과 보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나 현재 조문의 내용은 단지 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타 시·도 및 관련 법안 검토

○ 타 시·도의 보육·가족 관련 조문에 포함된 특징

- 인천광역시와 강원도의 조례에서는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가족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최근 가족생활의 평등성은 가족 단위 뿐 아니라, 공동체 단위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광주광역시의 경우 “가족친화공동체 조성지원” 규정으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
-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보육의 의미는 단지 자녀양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와의 관계에서 모성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이에 전남, 경북,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에서는 “모성보호의 강화(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관련조항 비교

- 가족과 관련하여 가족 내의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한 시책마련(신규)을 포함하고, 보육과 관련하여 아동보육을 별도의 조문으로 두지 않고 보육을 “모성”의 권리로 접근하며 (‘모성보호’ 강조) 이에 따른 비용의 사회적 부담을 규정한 점이 신규로 포함됨
- 특히 「성평등기본법안」에서는 전통적 성역할 분업에 의해 여성이 주로 담당해온 가사노동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p>제29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맞벌이부부,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0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 양육, 가족행사 등에 있어서 성평등한 가족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맞벌이부부 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제도나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37조(모성 보호의 강화) ①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 보호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1조(모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 보호 및 권리보장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p>

□ 개정방향

- 가족 관련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과 가족내 성평등한 역할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가족형태 및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아동보육은 보육시설에 관한 설치조항 등은 「서울특별시보육조례」에서 다루어질 내용이며, 본 조례에서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음. 오히려 모성보호를 ‘모성권’으로 하여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여성이 임신·출산·수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임

4) 여성인권

□ 현황과 문제점

- 관련 조항 : 제15조의 3항과 5항
 - 여성인권 관련 조문은 제15조의 ③, ⑤항으로 성폭력 및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지원내용에 있어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성매매 여성의 발생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제시하고 있음.

제15조(복지증진)

- ③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⑤시장은 성매매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문제점

-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시책은 복지의 관점이 아닌 기본권 혹은 인권침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사회환경 변화는 여성인권 및 권익 침해의 여지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이 소극적임. 따라서 여성폭력예방에 필요한 시책강구-피해자에 대한 의료·정신적 치료 및 주거지원-교육·취업 등의 자립지원으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타 시·도 및 관련 법안 검토

- 타 시·도 관련 조문검토

- 전라북도의 경우 여성인권 확보방안의 범주로 성폭력·가정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도 여성인권 확보방안에 대한 규정으로 ‘평등 소리방’의 설치·운영과 ‘아동·여성보호 연대’ 관련 조문을 포함하고 있어 예방과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도 여성인권으로 ‘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보장’과 관련한 조문을 두어 소수자에 대한 권익보장을 위한 근거가 되고 있음. 강원도의 경우에는 성희롱·성차별 방지 및 적극적인 피해자 대책 마련의 의지와 동시에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정책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외에 ‘여성 사랑방’설치(시행규칙 제13조), ‘전문상담원’(시행규칙 제14조)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관련조항

- 여성인권과 관련하여 두 법안은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 외에도 가해자에 대한 교화, 모든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여성정책기본법안」은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활·자립 프로그램 개발,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특징임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p>제36조(여성폭력의 방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4조(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한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5조(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 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공공</p>	<p>제35조(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성희롱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p>

<p>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성희롱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공공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성희롱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1조(성차별시정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에 따른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전담하는 성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제19조(성차별시정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 또는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성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둔다.</p>
<p>제44조(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 개정방향

- 현재 서울시 기본조례에서는 ‘성희롱’ 관련 규정이 제13조(성차별 개선 등) 조문에서 다루고 있으나 독립 규정으로 다루어져야 함. 또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와 관련하여, 사후적 규정 뿐 아니라 사전적 예방차원의 규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폭력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음

5) 성 주류화 제도

□ 현황과 문제점

- 관련조항은 제4조 (적극적 우대조치), 제6조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제8조 2항 (성별영향평가), 제10조 (시정참여확대), 제11조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등의 규정이 있음

제4조(적극적 우대조치) 서울특별시·시장·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통계·자료의 성별표기) 시장은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②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참여 확대) ①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시장은 양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험실시 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공무원 채용공고시 여성의 응시가 장려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투자기관내 여성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정책에 성평등관점 통합을 위한 주요 실천도구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 통계, 성인지교육 등의 방법이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음. 하지만 서울시 기본조례에는 성별분리 통계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교육 관련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여성정책부서의 개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 평가기준, 결과활용, 성평등 책임관 지정,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명시될 필요가 있을 것임

□ 타 시·도 및 관련 법안 검토

○ 타 시·도 관련 법안의 특징

-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단순 평가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정책이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성인지적 정책반영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음. 또한 성인지 예산 제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북 등이며 구체적인 조문은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정책을 반영해야한다’ 임. 마지막으로 성별분리 통계에 대한 규정은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표현으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데 충북, 경북, 강원도의 경우에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 조사 및 여론 조사 실시’ 규정으로, 경북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도정에 반영’에 관한 규정으로 등으로 제시되어 있음

- 「성평등기본법안」, 「여성정책기본법안」의 성 주류화 관련 조항
 - 두 법안 모두 성 주류화 관련 조항의 구성이 비슷하게 구성되고 있음. 「성평등기본법안」의 성 주류화 관련조항으로는 국가 성평등 지수의 작성 및 발표, 성 주류화 조치, 성인지 통계,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성인지 교육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여성정책기본법안」 역시 성평등 지수의 작성과 발표, 성별통계의 작성·보급, 법령·정책에 대한 성인지 분석·평가, 성인지 교육 실시, 정책 분석·평가기관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제23조 성평등지수의 작성과 발표 지역의 성평등 정도 지수화를 위한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공표	제9조 국가 성평등 지수의 작성과 발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 작성·발표
제11조 성별 통계의 작성·보급 성별통계의 작성, 보급, 활용	제42조 성 인지 통계 등 성 인지 통계의 산출, 보급
제24-26조 법령·정책·예산에 대한 성인지 분석·평가, 성인지 교육 실시 제34조 정책분석·평가기관 설치 등	제39-43조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 개정방향

- 성 주류화 제도를 서울시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추진기반을 명시화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을 위한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내용으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정책개선 실행 명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 시행 명시,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의 근거규정 마련,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을 위한 성별분리 통계 생산 명시,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자문 지원의 근거조항마련, 성 주류화 제도의 효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제시하여 볼 수 있음. 또한 성 주류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 주류화 관련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통합하여 구체화하여야 할 것임

6) 거버넌스

□ 현황과 문제점

- 관련조항은 제10조(시정참여확대), 제20조(국제협력지원), 제21조(의견수렴창구 운영), 제22조(유공자표창) 등이 있음

제10조(시정참여 확대) ①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견수렴창구 운영) ①시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 실현을 위해 여성의 요구, 필요, 경험 등을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정에서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여성단체역량강화, 제도와 정책에 민간영역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타 시·도 및 관련 법안 검토

- 울산시의 경우 제2장 제7조에 시민참여 조항을 만들어 여성시민의 요구를 수렴·반영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명문화하고 있음.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은 “①시장은 예산의 편성,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예산,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시장은 시행계획의 착수단계 및 중간결

과 보고단계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건의된 사항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여성정책수요 욕구조사 결과 및 공청회의 내용은 공개하도록 한다.”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관련조항 비교
 - 「여성정책기본법안」의 거버넌스 관련 내용은 국제협력과 여성단체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성평등기본법안」 역시 성평등 관련 국제조약의 체결 및 이행 등(제37조)과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제51조)으로 민과 관의 파트너십 관계를 강조하고 있음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제33조 국제협력 국제회의 여성참여 확대, 개발도상국의 성평등 실현과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교류활동 지원, 국내외 한민족 여성 간 교류와 연대강화를 위한 시책마련	제37조 성평등 관련 국제조약의 체결 및 이행 등 국제조약 이행을 위한 시책 강구
제48조 여성단체 등의 지원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지원 및 경비 보조	제51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성평등과 관련된 학계 및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에 적극 협력

□ 개정방향

- 거버넌스 내용은 울산광역시 시민참여 조항을 참조하여 의견수렴과 욕구조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정책수요 및 욕구조사 뿐 아니라 전문가 및 여성·시민단체에게 각 실국의 사업시행계획, 착수단계, 중간 및 결과보고단계에서 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반영결과를 보고·공개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7) 도시공간 및 시설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도시공간 및 시설 관련 주요 법조문 현황은 없음

-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공간 및 시설 관련 여성행복프로젝트 사업은 기존 여성 정책내용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구축이라는 도시공간권의 문제를 제기하였음. 이를 여성가족부가 받아들여 여성친화도시 개념으로 발전시킴. 또한 서울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구축을 위해 여성들이 불편해하는 도시시설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2007, 서울시 인터넷여론조사)²³⁾ 주요 시설들에 대한 여행시설 인증사업을 시행함. 여행화장실, 여행주차장, 여행길, 여행공원, 여행아파트 등에 대한 인증매뉴얼과 평가지표를 만들고,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여행시설로 인증하는 제도임. 이는 도시 주요 공간 및 시설 사용자의 절반이 여성임을 명시화하면서 여성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음

□ 타 시·도 및 관련 법안 검토

- 16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만이 ‘여성·가족친화도시 기반시설 조성’의 장을 별도로 구성하여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음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정책기본법안」의 관련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여성정책기본법안」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조항이 있는 반면 「성평등기본법안」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여성정책기본법안」에서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규정내용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²⁴⁾

23)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한 성별 응답비율의 격차를 보면 화장실 31.3%, 대중교통 17.0%, 운전·주차 16.6%, 보육시설 13.6%, 보도통행 8.5%, 공원녹지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4)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개념규정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 및 도시’임. 따라서 여성친화도시는 단지 도시공간 및 시설에 관련된 정책이 아니라 여성을 지역 발전의 주체로 위치시키고 일상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종합적인 지역정책으로 바라볼 수도 있음(여성가족부(2009),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발전방향』).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제32조(여성친화도시)①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없 음

□ 개정방향

- 도시공간 및 시설에서 여성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추진체계: 여성위원회

□ 현황과 문제점

- 여성정책의 추진체계와 관련한 조항은 제3장 여성위원회 전체 조항임. 구체적인 내용은 제23조 (설치및기능), 제24조 (구성), 제25조(위원의 임기), 제25조의2 (해촉),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7조 (회의), 제28조 (의견청취 등), 제29조 (분과위원회), 제30조(운영세칙)임. 현행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는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3조(설치 및 기능)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제24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정책업무관련 시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 그리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 ③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2(해촉) 위촉위원이 금과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회와 관련이 있는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여성정책·남녀평등·사회참여·여성복지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타 시·도 및 관련 법안 검토

○ 타 시·도 관련 규정의 특징

- 추진체제로 16개 시·도의 조례에서는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여성위원회 관련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음. 위원회의 명칭은 여성위원회(서울시), 여성발전위원회(경기도, 강원도, 광주시, 울산시, 인천시, 충남), 여성정책발전위원회(경남), 여성정책위원회(경북,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북, 충북), 여성정책심의위원회(전남), 여성특별위원회(제주도) 등 다양함
- 경기도는 ‘여성발전위원회’ 외에 ‘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성평등정책조정회의’를 두고 각 실·국의 성인지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별도의 추진체계 운영 근거를 갖고 있음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 관련조항 비교

- 「여성정책기본법안」에서는 추진체제로 여성지위위원회, 실무위원회, 여성정책책임관 지정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성평등기본법안」에서는 추진체제로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설치, 성평등정책 책임관 및 담당관 지정을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두 법안 모두 본 위원회를 지원할 실무위원회 운영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제2절 여성정책 추진체계 제12조 여성지위위원회 제13조 여성지위실무위원회 제14조 심의결과의 통보 및 반영 제15조 여성정책책임관 등의 지정	제2절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11조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 제12조 성평등정책 실무위원회 제13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제14조 성평등정책 책임관 및 성평등정책담당관의 지정

□ 개정방향

- 여성정책에 관한 각 실국과의 정책 조정·협의과정이 중요해지면서 추진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여성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넘어 실국 간 협력과 조정,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서울시 실·국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 구성을 통한 여성정책 업무 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정과 협력기능을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이 필요함.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여성정책 연계성을 통한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성도 있음

4. 여성발전기금

□ 현황 및 문제점

○ 관련조항

-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규정은 제31조 기금의 설치 등, 제32조 기금의 용도, 제33조 기금의 관리·운용을 정하고 있음. 그리고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 관리·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문제점

-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현재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기금의 용도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이외 여성인권 보호, 성평등 증진 등 여성정책의 환경변화와 시대적 이슈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타 시·도 및 관련 법안 검토

○ 타 시·도 관련 내용의 특징

- 기금용도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 모두 기금의 용도로 ‘성차별, 성희롱 및 성별을 이유로 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여성정책기본법안」에서 기금의 명칭은 ‘여성발전기금’인 반면, 「성평등기본법안」에서 기금의 명칭은 법명과 일치되도록 ‘성평등기금’으로 함. 기금의 용도에서의 차이는 「성평등기본법안」의 경우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성차별, 성희롱 및 성별을 이유로 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의 지원’과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 「여성정책기본법안」에서 기금의 용도는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성차별 및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그밖에 성평등 실현 및 가족지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 개정방향

- 기금의 용도 규정에 있어서 기본조례의 내용을 반영한 용처의 명시가 필요함. 또한 서울시에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 특별히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제 5 절 현행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방향

1. 조례 명

- 그동안 여성정책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남성이 누리는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득권의 동등한 배분을 요구함. 이러한 방법으로 여성들은 경제발전과정에 노동자와 생산자로서 동등한 참여를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국가

는 여성교육·훈련, 가족계획 및 건강관리, 여성소득창출 등과 같은 지원을 하게 됨. 이러한 여성중심(WID women-in-Development)의 접근은 여성의 특수한 현실에 관한 국가의 정책적·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고용·교육 등에서 여성의 참여기회가 확대되며, 여성문제 전담기구들이 설치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됨

- 하지만 여성중심접근은 여성이 발전에 통합되는 성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남성중심으로 편중된 정치·경제·사회의 권력구조, 성별 차이를 서열화하는 남성중심의 기준과 전통적 성역할 분업관에 기초한 남녀(젠더)관계는 크게 변화시키지 못함. 또한 여성정책이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만 보는 편견으로 인해 남성들의 관심과 협력을 크게 얻지 못했음
- 이에 여성정책 패러다임은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의 공동참여·공동책임의 구현을 기초로 남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기 위해 젠더중심(GAD, Gender-and-Development)의 접근으로 변화하고 여성과 남성을 모두 고려하는 양성평등 정책으로 전환됨. 이로 인해 남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아휴직제 도입, 고용 및 정치/정책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이 실시되고 있음. 또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사회적, 정치적 구조로 바라볼 수 있는 성인지 관점(gender-perspective)이 정책의 모든 과정에 통합될 수 있도록 성 주류화 전략을 채택함. 이에 모든 영역에서 성인지 접근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전략에 초점을 두고 여성정책을 특정분야 위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모든 분야의 정책에 성인지(젠더) 관점을 통합하기 시작함
- 이렇게 정부정책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이 투영되고 있으나 여성정책 시행의 규정이 되고 있는 기본법이나 조례는 아직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정책이념과 배치되고 있고 사회적 공감대와 법적 안정성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다시 말해, '여성발전기본조례'라는 조례명은 국내외 여성정책이 여성중심 또는 여성발전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젠더중심의 정책접근으로, 더 나아가 성 주류화전략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여성정책의 목적이 성평등 촉진이나 성평등한 환경조성이 아닌 여성발전 또는 여성의 지위향상으로만 협소하게 이해되거나 오해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조례명은 여성정책의 목적이 성평등 촉진, 성평등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조례 명에 ‘성평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조례 명에 ‘성평등’을 명시할 경우 여전히 여성중심의 정책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 특화 전략과 주류화 전략 두 가지(쌍둥이 전략, twin-track approach)가 모두 필요함. 여성특화전략은 여성들이 주류화 제도에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연계역할을 할 수 있으며, 성 주류화의 첫 번째 단계도 여성의 대표성 강화임(김양희, 2010)
- 또한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서울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으로서 작용하고, 성평등을 위한 서울시 정부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정책’ 개념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 조례의 내용이 대부분 서울시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책무규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함
- 일반적으로 정책관련 ‘기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규정으로 구성되고 있음. 즉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협의를 통해 국가책무를 달성하도록 규정하거나 지역적 특색에 따라 요구되는 독자적 관련내용을 부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이 수행하여야 하는 책무규정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음. 따라서 ‘기본’ 조례라고 하여 여성정책 방향 및 내용에 대한 선언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님.
- 성평등은 가족,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각각의 영역에 대한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 즉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임. 이런 개별 법률들은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관련법으로 일관성,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법들의 특정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면서 본 조례를 다른 조례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기 위해 ‘기본’ 조례로 명시할 것을 제안함

- 결국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로 명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2. 총칙

-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 목적 규정에 의하면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목적 규정으로는 매우 불충분함.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와 같이 조례 제정을 통해 지향점을 분명²⁵⁾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음. 목적규정에 담을 내용은 양성의 실질적 평등과 여성과 남성이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시의 책무(제2조) 내용도 현행 소극적 책무에서 벗어나 여성정책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실시하고, 필요한 체제 정비와 재정 마련,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더 나아가 제7조(여성정보제공)와 제21조(의견수렴창구 운영)의 내용을 책무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즉 시민에게 여성정책의 추진에 관한 정보 제공과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여성정책과 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시민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책무화 할 필요가 있음
- 제4조의 ‘적극적 우대조치’는 「여성발전기본법」과 같이 적극적 조치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적극적 조치는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잠정적 우대조치’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우대조치’라는 용어가 여성을 특별대우하거나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게 되어, ‘과거차별을 보상하고 현재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는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여성계의 지적이 받아들여져,

25)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2년 개정에서 ‘적극적 조치’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음. 또한 적극적 조치는 누적된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시책 중의 하나로 총칙보다는 성평등 시책의 하나로 위치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들의 근거규정이 되고 있는 다양한 조례들과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여성정책

- 제2장 여성정책의 시책규정에는 여성정책과 성 주류화 정책이 혼재되어 있음. 이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제2장의 제목을 「성평등정책기본조례」명에 합당하게 ‘성평등정책’으로 변경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함

- 성평등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보장(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확대 및 여성공무원의 시정참여 확대 등)
- ② 일-가정양립지원(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 ③ 사회·문화 분야의 여성참여 확대(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등 사회·문화 분야의 여성참여 확대 등)
- ④ 여성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⑤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 ⑥ 취약여성(이주여성, 빈곤여성, 한부모가정, 장애여성, 여성노인, 비정규직 여성, 새터민 여성 등)의 건강과 복지향상
- ⑦ 성별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⑧ 평등한 가족생활 및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⑨ 시정에의 시민참여와 국제협력 지원
- ⑩ 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조사연구 실시 등

- 성 주류화 조치로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시의 모든 정책이 성인지적으로 수립·시행되고 평가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대한 의무규정

- ② 성별분리 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정의 구체화²⁶⁾와 성인지 예산²⁷⁾, 성인지 교육 규정과 성 주류화 조치간의 연계 규정 등
- 또한 서울시 여성정책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여성행복프로젝트’ 사업 중 성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여성행복프로젝트의 성과로는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과정 운영, 도시공간 및 시설에서 여성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 기존 여성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모성건강에서 확대된 여성건강권 등에 대한 인식 등을 들 수 있음

4. 여성위원회

- 현행 여성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시장이 위촉직 위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음. 이런 구성은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여성발전기본조례와 비교할 때 진일보 한 것임. 그러나 여성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한정하는 것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자문기구는 행정의사를 결정하거나 이를 표시·집행하는 권한이 없고, 오직 참고의견을 제출할 뿐이기 때문임. 즉, 시장에게 조언은 하지만 시책 자체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기능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28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회와 관련해서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적으로는 심의 기능도 수행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명문화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여성위원회의 명칭은 「서울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및 자문활동을 위해 ‘성평등위원회’로 명칭변경을 고

26)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이 제안되어 있음.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을 받아들여 「서울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 안에 구체적 시행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즉 분석평가대상, 분석평가 내용, 시기, 분석평가서 작성 및 보고, 개선권고, 제도 연계 등의 내용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할 것임.

27)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011년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8일 공포됨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었음.

려할 수 있음. 또한 성평등 정책에 관한 각 실국의 협력과 관심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실국의 협조가 관건이므로 서울시 실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조정할 수 있는 위원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여성위원회 설치에 서울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와 관련된 내용임. 따라서 제3장 여성위원회의 명칭을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 명시할 것을 제안함.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규정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 주류화 조치 전반을 추진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책임관 지정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5. 여성발전기금

- 기금이란 정부가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원칙에서 벗어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의 탄력성이나 효율성 및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제도의 하나임
-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법 제18조의 여성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음
-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은 여성정책의 중요성과 여성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자금 확보를 통해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그 의미가 있음.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차원의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과 예산이 중앙과 비교해 미흡한 상황에서 여성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여성단체의 활동력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그 명칭을 현행대로 유지할지, 법명에

맞도록 ‘성평등기금’으로 개정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기금의 지원 용도로는 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성평등기본법안」과 「여성정책기본법안」에서 동시에 기금의 용도로 제시하고 있는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 지원’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

6. 실효성 제고 및 서울시 정책 특성 반영

- 현행 조례는 ‘꼭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닌 준수규정에 그쳐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예-제1장 제2조 시의 책무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따라서 당위적·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집행력의 담보가 필요함. 또한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의 내용이 필요함. 각 시·도의 특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차이를 보이지 않음. 예를 들어 대도시여성들이 느끼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타지역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형사정책연구원)등을 반영하여 차별성 있는 내용 구성이 가능할 것임

III

「서울특별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개요

제1절 법의 명칭

제2절 조례의 체계와 구성

제3절 조례의 내용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서울특별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개요

제 1 절 법의 명칭

가. 성평등 포함

-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나 국내외적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함. 즉 조례제정 당시와는 여성정책 환경이 많이 변화하였음에도 커다란 틀의 변화없이 일부 조항들만이 개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다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념이나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함
- 동 조례의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이 처한 차별과 소외 빈곤 등의 특수한 상황을 시정하는데 중점을 둔 여성정책들에서 많은 성과를 내었음. 그러나 여성특화정책으로 오인하여 남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여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나 권익향상, 전통적인 성별역할 분업관에 기초한 젠더관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나타냄
-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남녀가 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투여되어야 하며 현재 여성들이 처한 다양한 조건과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발전적 정책과 젠더관계의 변화에 중점을 둔 정책, 성 주류화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됨으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제명에 충분히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동 조례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지향인 ‘성평등’이 조례명에 포함

되어야 할 것임. 성평등은 이념지향적인 면이 있어서 조례명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법령에 이념지향적인 입법례 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등이 있는 상태임. 또한 조례명에 성평등을 포함시킴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의 개념을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봄

나. 제명 선정

- 「서울시여성정책기본조례」는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명과 비교하여 ‘여성발전’을 ‘여성정책’으로 변경하여 여성정책 패러다임에서 ‘여성중심’의 패러다임을 견지하고 있으나 여성발전은 다변화된 여성정책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는 현행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명과 비교하여 여성정책의 관점이 ‘여성중심’에서 ‘젠더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함. 그러나 ‘성평등기본조례’의 제명은 가정과 사회 전반의 젠더관계의 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여전히 여성중심의 정책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 「서울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는 여성정책 패러다임에서 ‘여성중심’의 패러다임과 ‘젠더관계’ 패러다임의 양자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임
 - 즉, 가정과 사회 속에서 성평등한 관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여전히 약자인 여성의 권익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여성중심의 정책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성평등 관계를 규정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특성을 나타내는 제명으로 「서울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 2 절 조례의 체계와 구성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3장 여성위원회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제5장 보칙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6장 보칙

제 3 절 조례의 내용

가. 주요 개정 골자

1) 조례목적의 보완 및 정의 규정 신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26조

- 성평등 촉진과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서울시 여성정책 추진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목적’ 규정과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변경하고, 동 조례 상에 나타난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음. 또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하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음

2) 서울시 여성정책의 내용을 포괄하는 근거규정 마련: 안 제24조, 제27조

- 서울시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한 공간 및 시설 구축이나 개선과정에서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반영하고자 시행한 여성행복시설환경 구축 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이 안전, 편리,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서울시 여성정책을 통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정책기획과정에서부터 각 실·국 담당자들이 여성관점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여성위원회 및 추진체계의 정비: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서울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위원회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여성위원회의 시정에 대한 자문기능을 심의, 조정기능으로 강화하고, 조례 개정의 목적에 맞도록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개명하고 구성과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서울시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투여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성평등 실현은 각 실국에서 행하는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정책수립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투여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기능확대 및 강화, 체계 정비를 통하여 성평등 정책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각 실국본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성평등정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됨

4) 성평등 촉진 및 정책의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한 규정의 정비: 제16조~20조, 제35~38조

- 현행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성평등 관계를 강화하는 규정으로 정책범주와 대상 등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함
- ‘일·가정 양립 지원’ 규정은 오늘날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욕구와 수요의 보편적 현상에 따른 가정과 사회시스템 지원의 측면에서 신설된 조항임(개정안 제17조)
- ‘모·부성의 권리보장’ 규정은 기존 임신·출산·양육이 여성의 역할로 규정되어 온

전통적인 성편견을 제거하고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남성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남녀공동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임(개정안 제18조)

- ‘평등한 가족생활’ 규정은 현행 규정에서 특정계층(맞벌이부부,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에 한정된 지원 규정을 확대·보완한 것으로 사회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 평등을 강조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지원규정을 포함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완·변경함(개정안 제19조)
- 성 주류화의 도구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제규정 체계를 정비함
 -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성평등한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주요 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제8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조문을 별도 신설(개정안 제35조)하여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수행의 구체적인 실행규정을 포함함
 -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격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이 제도의 시행 및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개정안 제36조)

5) 법체계 및 여성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용어 및 위치 조정: 안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5조

- 현재 조례의 법규정 체계는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당시와 커다란 차이 없이 규정되어 있어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과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내용을 담았음
 - ‘적극적 우대조치’ 규정을 ‘성평등 촉진 시책’ 장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적극적 조치’로 용어를 변경함
 - 여성정책의 목적규정에 맞도록 남녀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함
 - ‘맞벌이 부부·편부모 가정 등’을 ‘다양한 가족형태’로 변경하여 맞벌이나 한부모 이외의 가족도 정책대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의 사회통합적 관점을 견지함
 - 성차별의 정의규정에 맞도록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제23조) 규정에서 평등한 시정문화 확립을 위한 조건에 문서, 회의 외에 ‘근무행태에서’ 용어를 삽입함
 - 선도·보호의 대상으로 여성을 인식하는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 ‘성매매 요보호 여성’ 용어를 ‘성매매 여성’으로 변경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용어를 ‘취약계

층 여성'으로 변경함

- 가족정책의 대상이 이미 저소득 뿐 아니라 성역할 변화와 같은 일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한부모 가족'으로 하여 정책대상을 확대함

나. 장별 조례 개정 내용

1) 제1장 총칙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시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적극적 우대조치)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총칙의 구성은 크게 목적 및 정의, 시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함
 - 개정안에서 조례 설치의 목적을 명시하고, 본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 필요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조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였음
 - 본 조례의 시행은 시의 책무 뿐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권리의식, 시민 의식을 토대로 추진됨을 명시하였음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함으로써 본 조례가 갖는 중요성을 명시함

(1) 법의 목적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9. 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명시된 목적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을 규정하고 있

어 조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함

-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 규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여 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서울특별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함

(2) 정의

현 행	개 정 안
없음	<p>제2조(정의)</p> <p>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부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성인지”(性認知)란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성을 인식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③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p> <p>④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성적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p>

- 현재 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등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함. 따라서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성평등 목표를 법의 제명에서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주요 용어들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 개념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편견 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받는

것에서 나아가 ‘모·부성의 보호’ 개념을 추가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성인지”(性認知)란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용어정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촉진시키는데 있어 기본 전략에 대한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다양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이루고자 함

○ 성차별과 성희롱의 정의를 시대에 맞게 재정의 하였음

-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이라고 정의함
-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그 밖에 성적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함

(3) 시의 책무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08.09.30)</p>	<p>제3조(시의 책무)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p>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가 정책추진을 위해 명시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의 책무 규정에 따라 재원마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함.

(4) 시민의 책무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30)</p>	<p>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성평등 촉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조항에서 나아가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시민의 권리를 보완하고, 시민의 책무 관련 범위를 모든 영역으로 확대함
 - 따라서 ‘모든 시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
- 시민의 권리와 함께 시민의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과 남성 모두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와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였음
 -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5) 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 행	개 정 안
없음	<p>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 본 성평등정책기본조례는 서울시정의 모든 시책을 기획·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조례로서 다른 조례와 배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개정하였음

2)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여성정책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3장 여성위원회	제7조(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23조(설치 및 기능)	제8조(구성)
제24조(구성)	제9조(의견청취 등)
제25조(위원의 임기)	제10조(분과위원회)
제25조의2(해촉)	제11조(운영세칙)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등)
제27조(회의)	
제28조(의견청취)	
제29조(분과위원회)	
제30조(운영세칙)	

- 개정안에서 제2장은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로 구성함
-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은 제6조에서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주요 정책 내용을 규정함
 - 성평등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추진체계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성, 분과위원회, 성평등책임관 지정 등을 규정함

(1) 성평등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p>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09.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주요 정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 부부·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바. 여성 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p>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3. 주요 정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마.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바.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사.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 지원 아. 기타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4. 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p>

현 행	개 정 안
사. 그 밖의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08.09.30) 4. 제4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4.06.21, 2008.09.30) 5.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06.21, 2008.09.30)	때에는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치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 성평등위원회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에서 제5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근거한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내용이 개정안에서는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정함. 조례명과 일관되게 본 조례에 포함된 시책명을 ‘성평등정책’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시행계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시행계획에 포함될 시책분야를 크게 8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
- 성평등정책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라항은 기존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로 변경하여 성평등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보호’적 접근이 아닌 ‘인권’적 접근방식으로 개선·7수정함
-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직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누락된 정책 내용을 보완함
-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맞벌이, 편부모 가정 등”의 규정에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대상을 확대시킴
- 서울시 성평등정책의 성실한 추진과 실적에 대한 점검을 위해 ④항에서 시행계획에 대한 연도별 추진실적을 성평등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시민에게 공표하게 함으로써 시행계획에 포함된 성평등정책을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음

(2)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9.30) 	<p>제7조(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 시행계획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정책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평등정책 관련 조사연구 5.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 성평등정책 관련 자문기구인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개정하고 구성,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였음
- 성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평등위원회’에 심의· 조정· 자문기능으로 확대강화하고, 운영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항목과 함께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고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이루고자 함

(3) 성평등위원회의 구성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06.21, 2008.09.30)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정책업무관련 시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 그리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03.06.16, 2004.06.21, 2008.09.30) ③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1.1.5, 2003.06.16, 2008.09.30) 	<p>제8조(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정책 업무관련 시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 그리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이에 따른 적합한 관련용어로의 수정이 필요하며 현행 조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현 조례에서는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위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서울시정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을 위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자격을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이 변화하였음

(4) 의견청취 등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회와 관련이 있는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회와 관련이 있는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5) 분과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여성정책·남녀평등·사회참여·여성복지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06.16)</p>	<p>제10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 분과위원회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연구·검토기능을 갖도록 함
-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 뿐 아니라, 내부직원(공무원)을 포함함으로써 민-관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적인 연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함

(6) 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등

현 행	개 정 안
없음	<p>제12조(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등)</p> <p>①시장은 행정1부시장을 성평등정책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시의 실·국장을 성평등정책 실무담당관으로 지정한다.</p> <p>② 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점검·평가 한다.</p> <p>③ 실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성평등정책 관련업무, 제3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36조에 따른 성인지예산 및 제37조에 따른 성인지 통계 관련 사업 또는 업무의 점검, 성평등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제도 개선, 그 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④ 책임관은 성평등정책 업무 추진과정에서 실무담당관으로 구성된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 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은 신설 조문으로 서울시정 전반에 성평등정책이 형식적으로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서울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조정 역할을 담당하기 위함임. 따라서 행정1부시장을 성평등정책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시의 실·국장을 성평등정책 실무담당관으로 지정함
- 책임관의 역할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실·국 및 관련부서를 총괄·조정·점검·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 책임관은 성평등 정책 업무 추진과정에서 실무담당관으로 구성된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정의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규정함
- 실무담당관은 소관부서 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제35조), 성인지 예산(제36조) 및 성인지 통계(제37조) 관련 사업 또는 업무의 점검, 성평등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제도개선, 그 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 등을 추진함으로써 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성평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3)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
제6조(통계·자료의 성별 표기) 제7조(여성정보 제공) 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9조(여성주간행사) 제10조(시정참여 확대) 제11조(공직 등에서의 참여촉진) 제12조(남녀평등의식 제고) 제13조(성차별 개선 등) 제14조(경제활동 지원) 제15조(복지증진) 제16조(아동보육) 제17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18조(단체의 지원) 제19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제20조(국제협력 지원) 제21조(의견수렴창구 운영) 제22조(유공자 표창)	제13조(적극적 조치) 제14조(시정참여 확대) 제15조(공직 등에서의 참여촉진 및 관리직 승진목표제) 제16조(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등) 제17조(일·가정 양립 지원) 제18조(모·부성의 권리보장)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제20조(성평등의식 제고) 제21조(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등) 제2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제23조(여성의 복지증진) 제24조(도시공간 및 시설) 제25조(여성의 건강증진) 제26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제2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28조(성평등 문화의 조성)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제3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제32조(국제협력 지원) 제33조(시민참여) 제34조(유공자 표창)

- 조례에 포함된 정책의 내용을 담은 장으로 현행 조례는 ‘제2장의 여성정책’에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등의 성 주류화 기반, 여성정보의 제공, 주요정책 추진실적 평가, 여성주간 행사, 시정참여 확대, 공직 등에서의 참여촉진, 경제활동참여, 여성복지 등 여성정책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성 주류화를 위한 근거규정과 정책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체계에 맞추어 재정비함
- 개정안에서는 제3장을 성평등 촉진 시책의 장으로 규정하고 여성중심 접근에서 젠더관계 접근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강화 및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1) 적극적 조치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적극적 우대조치) (개정 2004.06.2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시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를 말한다. 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4.06.21, 2007.12.26, 2008.09.30)</p>	<p>제13조(적극적 조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시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시의회 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 현재 ‘적극적 우대조치’ 규정이 법체계상 맞지 않아 성평등촉진 시책의 장으로 재정비함. 적극적 조치 규정이 아직도 필요하냐는 의견이 있으나 매년 UNDP에서 발표하는 여성권한척도(GEM)을 보면 2009년 현재 109개국 중 61위이며 2011년 성별 격차지수(GGI)가 135개국 중 107위인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고 분석됨
-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남성의 사회참여보다 낮은 형편이고 아직은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용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적극적 조치’로 변경함

(2) 시정참여 확대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p>	<p>제14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p>

- 현재 위원회 여성참여율 현황은 2011 현재 28.6%에 그치고 있어서 법규정 30%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임.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 여성의 시각이 시정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여성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여야 함. 이에 대한 내용을 위원회 구성시 성평등을 위해서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촉직 위원정수의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개정함
- 위원회의 위원정수가 제1항에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성평등 위원회에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여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내용을 보완함

(3)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및 관리직 승진목표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p> <p>① 시장은 양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험실시 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상이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6.21)</p> <p>②시장은 공무원 채용공고시 여성의 응시가 장려됨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③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투자기관내 여성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④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제15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및 관리직 승진목표제)</p> <p>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2에 따른 제도를 도입·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직 등의 관리직에 여성 또는 남성이 일정비율이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직 승진목표제를 시행한다. 관리직 승진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능력 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장려하고, 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p>

- 서울시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30.6%로 전국의 29.5% 보다 높으나,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4.1%로 매우 낮은 실정임
- 서울시 공직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양성평등채용목표를 도입시행하여야 하며, 간부직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관리직 승진목표제도 시행하여야 함

- 공직 등에서의 채용을 넘어 승진목표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남녀의 참여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해 “참여촉진”을 여성이나 남성이 공직 등의 관리직에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직 승진목표제”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수정·보완함

(4) 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등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경제활동 지원)</p> <p>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30)</p> <p>③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30)</p> <p>④ 시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03.16, 2008.09.30)</p>	<p>제16조(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등)</p> <p>①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인력을 적극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차별문제 개선 및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기업운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 등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임신·출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⑥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p>

-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 참여 요구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주로 기업 활동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에서 나아가 취업여성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여성의 취업 및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마련을 통해 고용 전반에 걸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5) 일·가정 양립 지원

현 행	개 정 안
없음	<p>제17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시민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노력 3. 방과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가족친화 직장환경 및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9. 그 밖에 일과 가정을 조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여성의 사회참여증가와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반드시 필요함
-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및 규정내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요구되며 이는 사회전반적인 운동차원에서 움직여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과 관련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일·가정양립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 ‘보육’과 관련하여 기존의 보육시설 중심의 논의에서 나아가 남성육아휴직제와 같은 남녀간 공동분담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이를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과 가족과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6) 모·부성 권리보장

현 행	개 정 안
없음	<p>제18조(모·부성 권리보장)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양육 등 모·부성권을 보호하고, 모·부성권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p>

- 보육과 관련하여 ‘아동보육’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보육을 남성과 여성, 부모의 권리로 보아 “모·부성의 권리”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음

(7) 평등한 가족생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복지증진) ⑥시장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부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4.06.21, 개정 2008.09.30)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가사·양육·가족행사 등에 있어서 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맞벌이 부부 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에서 가족과 관련한 조문은 제15조(복지증진)의 ⑥항에서 ‘시장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 부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 가정은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족구성원 내 성평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사회 속에서의 성평등 구현은 더욱 요원함. 따라서 본 조문에서는 가족 내 평등을 기본적으로 하여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한 시책마련을 신설함

-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으로 맞벌이 부부 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명시하여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8) 성평등의식 제고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남녀평등의식 제고) 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장려하고, 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성평등의식 제고) ① 시장은 가정·학교·기업·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 인재개발원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 과정에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

현 행	개 정 안
③ 시 인재개발원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 과정에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2회 이상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5) ④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록 하여야 하며,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2회 이상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종사자, 시의원, 시민사회 단체, 기업,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조례명의 개정에 따라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성평등의식 제고”로 수정하는 등 내용상의 관련용어를 변경하였음
- 실질적인 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해서 기존의 가정 학교 사회교육에서의 남녀평등교육뿐만 아니라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대상을 가정, 학교, 기업, 사회교육 등으로 확대 규정함
- 또한 정책, 예산및 제도과정에서의 성평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 및 소속기관 종사자,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기업,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9)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등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복지증진) ③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성매매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3.06.16)	제21조(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행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정 여성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요보호여성”, “선도·보호사업”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이들 대상 집단에 ‘인권보장’의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표현용어를 수정하였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직업훈련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피해자지원을 한층 더 강화시킴
- 나아가 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교화 시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여성인권보호에 관한 보다 진전된 접근방식을 택함

(10)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현행	개정안
<p>제13조(성차별 개선 등)</p> <p>①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p> <p>①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또는 고객 등은 고용, 업무,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⑥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 현행 조례는 제13조 ‘성차별의 개선’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성희롱의 소지와 빈번한 발생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를 명시하여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조명으로 변경하였음
- 성희롱 금지와 관련하여, 대상 및 범위를 “시장 및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또는 고객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서울시와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시민에게 성희롱 금지에 관한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였음

- 지위 및 업무와 관련된 근무행태에서 발생가능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성차별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11) 여성의 복지증진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복지증진)</p> <p>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미혼모·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21)</p> <p>④ 시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직업훈련 및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p>	<p>제23조(여성의 복지증진)</p> <p>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장애인, 한부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 취약계층의 범위를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선도보호사업에 대한 규정내용을 삭제하고 “노인, 장애인” 뿐만 아니라 “한부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의 수요에 발맞추어 다양한 필요에 따라 교육,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

-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여성들이 처한 환경을 개선시키고 필요한 교육과 자립을 위한 조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평등한 사회참여와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12) 도시공간 및 시설

현 행	개 정 안
없음	<p>제24조 (도시공간 및 시설)</p> <p>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때 여성의 안전성, 접근성, 편의성, 쾌적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 개정안 제24조(도시공간 및 시설) 조항은 신설된 것으로 그동안 도시생활에서 여

성의 관점을 간과함으로써 축적되어 온 불편·불쾌·불만의 3불요인 제거에 초점을 둔 여성행복프로젝트를 기점으로 하여 도시공간 및 시설 설치에 여성의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 즉, 공간 및 시설 등 조성·개선 시 여성의 안전성, 접근성, 편의성, 쾌적성을 고려하여 반영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관점이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여기에 포함된 공간 및 시설의 범위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임

(13) 여성의 건강증진

현 행	개 정 안
없음	제25조 (여성의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임신·출산과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건강의 중대성은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건강을 위한 지원정책마련을 위해 ‘여성의 건강증진’ 조항을 신설함. 즉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14) 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여성정보 제공) ① 시장은 여성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여성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연회 서울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26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서울시 여성의 현실과 성평등 정책의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연회 서울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정보는 여성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중요한 자원임. 따라서 서울시민

은 시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자료발간이 필요함

○ 조례명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여성정보”에서 “성평등 관련 정보”로 수정함

(15)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p> <p>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구·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4.06.21)</p> <p>②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06.21, 개정 2008.09.30)</p>	<p>제2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p> <p>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구·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을 말한다)의 주요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투자·출연기관은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p>

○ 정책의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분명히 하여 평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공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함

○ 또한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첨가함으로써 투자·출연기관의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동기를 명시하였음

(16) 성평등 문화의 조성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여성주간 행사)</p> <p>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9.30)</p>	<p>제28조(성평등 문화의 조성)</p> <p>① 시장은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1년 중 1주년을 성평등 주간으로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시의원, 시민사회 단체, 일반시민, 기업의 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범국민적으로 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주간행사에서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시책마련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함

(17)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 여성관련시설이 여성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해 설치운영되어 온 것을 넘어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확대 강화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은 단독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함

(18)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단체의 지원) 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06.21, 2008.09.30)</p>	<p>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범시민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 성평등과 관련된 단체와의 협력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일방적인 정부의 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시와 단체와의 상호적 특징을 나타냄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으로 근거규정을 수정·변경하였음

(19) 자원봉사활동 지원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3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성평등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현행 ‘자원봉사활동 지원’ 규정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여성의 무임금 자원봉사를 강조하고 있음
- 개정안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은 ‘성평등 증진’이라는 자원봉사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의 성격을 명시함

(20) 국제협력 지원

현행	개정안
<p>제20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p>제32조(국제협력 지원) ①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평등 실현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p>

- 세계화,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이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국제무대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관련 규정을 강화함

(21) 시민참여

현행	개정안
<p>제21조(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시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p>	<p>제30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p>

- 성평등한 사회실현, 성 주류화 실천 등을 위해서는 모든 영역의 정책에 여성의 참여가 긴요한 필수조건이므로 여성정책거버넌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따라서 모든 시정의 수립, 집행 등에 여성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함. 즉 여성의 정책제감도를 향상하고 일상생활 및 현장에 밀접

한 성평등정책의 실현을 위해 여성의 요구, 필요, 경험 등을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음

- 여성들의 의견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등 관련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내용을 보완함

(22) 유공자 표창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08.09.30)	제34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성평등정책기본조례」의 기본취지에 따라 관련용어 “남녀평등”을 “성평등”으로 , 여성의 “복지증진”을 “권익증진”으로 수정하고 “인권보호”내용을 보완함

4)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여성정책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제9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8조(통계자료의 성별 표기)	제35조(성별영향분석평가) 제36조(성인지 예산) 제37조(성인지 통계) 제38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 주류화 관련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통합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의 내용으로 구체화시켜 규정함

(1) 성별영향분석평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3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②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	① 시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영

현 행	개 정 안
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06.21, 개정 2008.09.30)	<p>향을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p>

-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제의 도입을 규정하는 수준에 머무는 기존의 조례에서 나아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에도 반영하는 등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규정함

-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의 제정에 따라 성 주류화를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의 연계 등을 강조하고 성인지 교육 및 자문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2) 성인지 예산

현 행	개 정 안
없음	<p>제36조(성인지 예산)</p> <p>①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내지 제53조의 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p>

- 성인지 예산 시행 및 교육은 성평등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서는 관련 조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대상과 내용이 협소함. 따라서 이에 대한 관계조항을 신설해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

-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3) 성인지 통계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통계·자료의 성별 표기) 시장은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 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7조(성인지 통계) ①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시행에 필요한 성별분리 통계 및 자료를 산출·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p>

- 시의 모든 정책이 성인지적으로 수립·시행되고 평가될 수 있는 체제 마련에 대한 의무규정으로서의 성인지 통계 규정을 구체화함
-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인지 통계 관련 조항을 확장시켜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규정 등의 성 주류화 조치 간의 연계 내용을 규정함으로 성 주류화 실천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함

(4)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지원

현 행	개 정 안
없음	<p>제38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p>

- 성평등정책의 실질적인 효과 증진과 성 주류화 조치의 제도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함
- 또한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추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

IV

「서울특별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 본조례시행규칙안」

제1절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전문

제2절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 시행규칙안」 전문

제3절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조문대비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시행규칙안」

제 1 절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전문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부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성인지”(性認知)란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성을 인식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 ④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성적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

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성평등 촉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6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3. 주요 정책
 - 가. 성평등의 촉진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 다.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 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 마.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바.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 사.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 지원
 - 아. 기타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4. 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치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시장은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 성평등위원회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 시행계획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정책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평등정책 관련 조사연구
5.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정책 업무관련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 그리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③위원은 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회와 관련이 있는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등) ①시장은 행정1부시장을 성평등정책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시의 실·국장을 성평등정책 실무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점검·평가 한다.

③실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성평등정책 관련업무, 제3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

가, 제3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 및 제37조에 따른 성인지 통계 관련 사업 또는 업무의 점검, 성평등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제도 개선, 그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책임관은 성평등정책 업무 추진과정에서 실무담당관으로 구성된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

제13조(적극적 조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시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업을 말한다. 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시정참여 확대) ①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및 관리직 승진목표제) ①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2에 따른 제도를 도입·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직 등의 관리직에 여성 또는 남성이 일정비율이상일 수 있도록 관리직 승진목표제를 시행한다. 관리직 승진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장려하고, 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등) ①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인력을 적극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차별문제 개선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기업운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 등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임신·출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⑥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시민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노력
3. 방과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가족친화 직장환경 및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9. 그 밖에 일과 가정을 조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모·부성의 권리보장)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양육 등 모·부성권을 보호하고, 모·부성권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가사·양육·가족행사 등에 있어서 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맞벌이 부부 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성평등의식 제고) ①시장은 가정·학교·기업·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 인재개발원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2회 이상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종사자, 시의원, 시민사회 단체, 기업,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등) ①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또는 고객 등은 고용, 업무,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여성의 복지증진) ①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장애인, 한부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도시공간 및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때 여성의 안전성, 접근성, 편의성, 쾌적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5조(여성의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서울시 여성의 현실과 성평등 정책의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연1회 서울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2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구·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을 말한다)의 주요 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자치구·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성평등 문화의 조성) ①시장은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성평등 주간으로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시의원, 시민사회 단체, 일반시민, 기업의 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성평등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국제협력 지원) ①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성평등 실현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시민참여) ①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4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제3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시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 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성인지 예산) ①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내지 제53조의 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성인지 통계) ①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시행에 필요한 성별분리 통계 및 자료를 산출·제공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시장은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39조(기금의 설치 등) ①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0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2. 위원회 위원
3.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고,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⑤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⑦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기타 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의 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9.30)

제43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호보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 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절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시행규칙안」 전문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다른 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2(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성평등 주간 행사) ①조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성평등 주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성평등 주관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울시·자치구·소속기관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서울시 및 자치구 성평등 정책 우수사례 발표
6.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6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하반기에 다음년도 기금지원계획을 2 이상의 주요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이하 “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 능력
6.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등 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 기타 이 조례의 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부당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10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검사 등) ①시장은 매년 제7조의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회계
검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위한 위원은 심의회 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5인
이내로 한다.

③회계검사 및 사업평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 회의 등)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

제 3 절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구분	현 행	개 정 안
조례명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부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성인지”(性認知)란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성을 인식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④“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성적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시의책무	제2조(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08.09.30)	제3조(시의 책무)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시민의권리와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30)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성평등 촉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분	현행	개정안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적극적 조치	<p>제4조(적극적 우대조치) (개정 2004.06.21)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시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시의회 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를 말한다. 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4.06.21, 2007.12.26, 2008.09.30)</p>	<p>제16조(적극적 조치) 제13조로 이동</p>
다른 조례와의 관계		<p>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제2장 여성정책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p>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주요 정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 부부·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바. 여성 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사. 그 밖의 여성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08.09.30) 4. 제4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4.06.21, 2008.09.30) 5.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06.21, 2008.09.30)</p>	<p>제6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3. 주요 정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마.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바.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사.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 지원 아. 기타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4. 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위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치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시장은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 성평등위원회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p>
	제3장 여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p>제2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여성</p>	<p>제7조(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p>

구분	현행	개정안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문제에 관한 항 (개정 2008.09.30)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 시행계획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정책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평등정책 관련 조사연구 5.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구성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06.21, 2008.09.30)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정책업무관련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 그리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03.06.16, 2004.06.21, 2008.09.30) ③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1.1.5, 2003.06.16, 2008.09.30)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정책업무관련 시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 그리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07.16, 2008.09.30)	제9조(위원의 임기) 좌동 (시행규칙으로)
해촉	제25조의2(해촉) (본조신설 2001.07.16)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09.30)	제9조의2(해촉) 좌동 (시행규칙으로)
위원장의 직무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좌동 (시행규칙으로)
회의	제2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0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1.07.16, 2003.06.16, 2008.09.30)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07.16)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11조(회의) 좌동 (시행규칙으로)

구분	현행	개정안
	<p>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07.16)</p> <p>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1.07.16)</p>	
의견청취	<p>제2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분과위원회	<p>제2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여성정책·남녀평등·사회참여·여성복지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06.16)</p>	<p>제10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운영세칙	<p>제3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1조(운영세칙) 좌동</p>
성평등책임관 지정 등		<p>제12조(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등) ①시장은 행정부시장을 성평등정책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시의 실·국장을 성평등정책 실무담당관으로 지정한다.</p> <p>② 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점검·평가 한다.</p> <p>③ 실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성평등정책 관련업무, 제3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3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 및 제37조에 따른 성인지 통계 관련 사업 또는 업무의 점검, 성평등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제도 개선, 그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p> <p>④ 책임관은 성평등정책 업무 추진과정에서 실무담당관으로 구성된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p>
적극적 조치	<p>제4조(적극적 우대조치) (개정 2004.06.21)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시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시의회 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p>	<p>제13조(적극적 조치)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시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p>

구분	현행	개정안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p>정 2004.06.21, 2007.12.26, 2008.09.30)</p> <p>제6조(통계·자료의 성별 표기) 시장은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수 있다.</p> <p>제41조(성인지 통계) 제37조로 이동</p>
시정참여 확대	<p>제10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p>②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p>	<p>제14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60% 이상을 특정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②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p>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p>제13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양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험실시 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상이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6.21)</p> <p>②시장은 공무원 채용공고시 여성의 응시가 장려됨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③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투자기관내 여성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제15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및 관리직 승진목표제)</p> <p>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제도를 도입·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직 등의 관리직에 여성 또는 남성이 일정비율이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직 승진목표제를 시행한다. 관리직 승진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장려하고, 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p>
경제활동 참여지원	<p>제14조(경제활동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30)</p> <p>③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30)</p> <p>④ 시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03.16,</p>	<p>제16조(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인력을 적극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차별 문제 개선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기업운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 등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임신·출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이</p>

구분	현행	개정안
	2008.09.30)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⑥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제17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시민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노력 3. 방과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가족친화 직장환경 및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9. 그 밖에 일과 가정을 조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18조(모·부성의 권리보장)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양육 등 모·부성권을 보호하고, 모·부성권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보육	제16조(아동보육) ① 시장은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방과후 보육 확대 등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아동보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09.30)	제25조(아동보육) 삭제
평등한 가족생활	제15조(복지증진) ⑥ 시장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부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4.06.21, 개정 2008.09.30)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가사·양육·가족행사 등에 있어서 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맞벌이 부부 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평등의식 제고	제12조(남녀평등의식 제고) 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장려하고, 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 인재개발원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 과정에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	제20조(성평등의식 제고) ① 시장은 가정·학교·기업·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 인재개발원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 과정에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2회 이상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p>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2회 이상 편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5)</p> <p>④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남녀 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③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 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종사자, 시의원, 시민사회 단체, 기업,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15조(복지증진) ③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⑤시장은 성매매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3.06.16)</p>	<p>제21조(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등)</p> <p>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여성 인권보 호	<p>제13조(성차별 개선 등) ①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또는 고객 등은 고용, 업무,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⑥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여성 복지 증진 등	<p>제15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미혼모·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21)</p> <p>④ 시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직업훈련 및 재활을 지원하여야</p>	<p>제23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장애인, 한부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구분	현행	개정안
도시 공간 및 시설	한다.	<p>제24조 (도시공간 및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때 여성의 안전성, 접근성, 편의성, 쾌적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여성의 건강 증진		<p>제25조 (여성의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p>제7조(여성정보 제공) ① 시장은 여성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민에게 여성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연1회 서울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p>	<p>제26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민에게 서울시 여성의 현실과 성평등 정책의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연1회 서울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p>
주요 정책 추진 실적의 평가	<p>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구·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4.06.21)</p> <p>②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06.21, 개정 2008.09.30)</p>	<p>제2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구·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을 말한다)의 주요 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자치구·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p>
성평등 문화의 조성	<p>제9조(여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9.30)</p>	<p>제28조(성평등 문화의 조성) ①시장은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1년 중 1주년을 성평등 주간으로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시의원, 시민사회 단체, 일반시민, 기업의 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관련 시설의 설치	<p>제17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단체의 지원	<p>제18조(단체의 지원) 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06.21, 2008.09.30)</p>	<p>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구분	현행	개정안
자원봉사활동지원	제19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성평등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협력지원	제20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국제협력 지원) ①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평등 실현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민참여	제21조(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시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유공자 표창	제22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08.09.30)	제34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②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06.21, 개정 2008.09.30)	제3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성인지 예산		제36조(성인지 예산) ①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내지 제53조의 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성인지 통계	제8조(통계·자료의 성별 표기) 시장은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	제37조(성인지 통계) ①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구분	현행	개정안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p>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시행에 필요한 성별분리 통계 및 자료를 산출·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p>
지원		<p>제38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p> <p>① 시장은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p>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5장 여성발전기금
기금의 설치	<p>제31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8.09.30)</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8.09.30) 	<p>제39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용도	<p>제32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개정 2008.09.30)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08.09.30)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09.30)</p>	<p>제4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p>
기금의 관리·운용	<p>제3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09.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08.09.30)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09.30) <p>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p>	<p>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구분	현행	개정안
	<p>2005.06.16, 2008.09.30)</p> <p>1.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p> <p>2. 위원회 위원 (개정 2008.09.30)</p> <p>3. 여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항 개정 2003.06.16)</p> <p>③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09.30)</p> <p>④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고,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p> <p>⑤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에 참석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3.01.10)</p> <p>⑦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09.30)</p> <p>⑧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01.10)</p>	<p>2. 위원회 위원</p> <p>3.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③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고,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p> <p>⑤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에 참석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위탁할 수 있다.</p> <p>⑦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⑧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제5장 보칙	제6장 보칙
사무의 위탁	<p>제3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의 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9.30)</p>	<p>제42조(사무의 위탁) 좌동</p>
사전 협의	<p>제35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 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06.21)</p>	<p>제43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 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시행규칙안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 규칙명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시행규칙안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중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평등 위원회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서울특별시성평등정책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2(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2조의 2(해촉) 좌동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좌동
제2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의) 좌동	
성평등 주간 행사		제5조(성평등 주간 행사) ① 조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성평등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울시·자치구·소속기관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구분	현행	개정안
여성 발전 기금		5. 서울시 및 자치구 성평등 정책 우수사례 발표 6.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하반기에 다음년도 기금지원계획을 2 이상의 주요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하반기에 다음년도 기금지원계획을 2 이상의 주요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이하 "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 능력 6.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좌동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좌동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등 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 기타 이 조례의 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부당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9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좌동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서 등의 제출) 좌동

구분	현행	개정안
여성 발전 기금	<p>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제8조(회계검사 등) ① 시장은 매년 제7조의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위한 위원은 심의회 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5인 이내로 한다. ③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회계검사 등) 좌동</p>
	<p>제9조(심의회 회의 등)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2조(심의회 회의 등) 좌동</p>
	<p>제10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3조(감독) 좌동</p>
	<p>제11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p>	<p>제14조(기록의 관리·보존) 좌동</p>
<p>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p>	<p>제15조(준용) 좌동</p>	

참고문헌

- 김창연·성유진, 2010, 『2010 서울시 성인지 지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태홍·전기택·주재선, 2011, 『201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박선영·김정란·배은경·변화순·서영주·정봉협, 2009,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토론회』자료집, 국회여성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영도, 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1, 『2011 아젠다포럼-여성부문: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방향’ 제1차 회의(2011.6.24)결과』자료집.
- 여성가족부, 2009,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발전방향』
- 조정찬, 1989, 「법령 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연구」, 『법제』, 268. p.17.
- 차인순, 2011a,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2011.3)』.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경기여성연대, 2010, 『경기도 성평등! 제도와 실천의 경계를 넘다- 여성발전기본법관련 조례 제·개정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2010*, <http://hdr.undp.org/>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6~2010*,
<http://www.weforum.org/>
- OECD, *DAC 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http://www.oecd.org/dataoecd/56/46/28313843.pdf>, p.13.
- UN WOMEN, *OSAGI Gender Mainstreaming 2001*,
<http://www.un.org/womenwatch/osagi/conceptsanddefinitions.htm>,
- 서울시, 2007, 『서울서베이』
-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여성정책기본법안」, 의안번호 9854, 제출연월일: 2010.11.9, 제출자: 정부.
-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성평등기본법안」, 의안번호 8652, 발의연월일: 2010.6.23, 발의자: 신낙균 외 42명.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안」
「아동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경상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대구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라남도 여성발전조례」
「전라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충청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충청북도 여성정책기본조례」

2011-정책개발-028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방안 연구

발행인 박현경
연구자 서영주, 장명선, 손문금, 조연숙, 양소영, 이지현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代)

www.seoulwomen.or.kr

깨끗하고 투명한 일처리로 청렴 재단, 청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인쇄처 (사)장애인기업생산품판매지원협회인쇄사업소